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연구

A Research on the Legislation of Ministerial Ordinances of National
R&D Management

연 구 기 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 학 기 술 부

제 출 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기획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07월

주 관 연 구 기 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 구 기 간 : 2004. 12. 16 ~ 2005. 05. 15

주관연구책임자 : 이 길 우

연 구 원 : 홍 동 희

김 병 목

김 병 태

정 근 하

류 영 수

신 문 봉

연 구 조 원 : 전 혜 진

보고서 초록

과제관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2004. 12. 16 - 2005. 05. 15	단계 구분	(해당단계) /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 사업명	연구기획·평가사업			
	세부사업명	연구기획사업			
연구과제명	중 과제명	-			
	세부(단위) 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연구 A Research on the Legislation of Ministerial Ordinances of National R&D Management			
연구책임자	이길우	해당단계 참여연구원수	총 : 8명 내부 : 7명 외부 : 1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 30,000천원 기업 : 천원 계 : 30,000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제도팀		참여기업명	-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		상대국연구기관명 :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I. 연구의 배경 ○ 공동관리규정에서 제시한 원칙과 기준은 개괄적이어서 각 부처에서는 원칙과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행정규칙을 제정·운용할 수밖에 없고, 각 부처별 행정규칙의 제정·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원칙과 기준이 부처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이에, 공동관리규정을 실질적인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 기준·절차서식 등을 각 부처에 통일 적용할 수 있는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부령)의 제정이 필요함. II. 연구내용 ○ 연구내용은 크게 기준제정 부분과 서식제정 부분으로 나누어 짐. ○ 기준제정 부문: 구체화된 기획의 내용(연구기획에 담겨야 할 내용), 우수 연구개발결과 활용 방안, 연구개발 성과의 분류 및 전문기관별 관리대상, 연구개발 소외지역의 기준, 단계평가·최종평가·평가후속 조치,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절차 등 ○ 서식제정 부문: 기술수요조사 양식, 연구개발 계획서, 연차실적 계획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서식, 연구개발 결과 최종보고서, 연구개발 결과 최종보고서 초록, 주관연구기관 자체평가 의견서, 연구결과 활용 계획서, 평가위원 등록 서식 및 공동활용 방안,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서 등 III. 연구결과 ○ 시행규칙 제정범위(제2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제1절) - 위임·시행·고시 사항(제2절) ○ 시행규칙 제정 입법수요(제3장) - 입법수요(제1절) - 부처별 연구개발 행정규칙 비교(제2절) ○ 시행규칙 제정안(제4장) - 주요내용(제1절) - 조문별 제정이유(제2절)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제정; 위임; 시행; 고시; 입법수요; 시행규칙 제정안; 제정이유			
	영어	Legislation; Mandate; Enforcement; Notification; Demand(Request) for Legislation; Draft of Ministerial Ordinances; Reason of Legislation			

요 약 문

과제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연구

I. 연구의 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에서 제시한 원칙과 기준은 개괄적이어서 각 부처에서는 원칙과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행정규칙을 제정·운용할 수밖에 없고, 각 부처별 행정규칙의 제정·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원칙과 기준이 부처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이에, 공동관리규정을 실질적인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절차서식 등을 각 부처에 통일적용 할 수 있는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부령)의 제정이 필요함.

II. 연구내용

- 연구내용은 크게 기준제정 부분과 서식제정 부분으로 나누어 짐.
- 기준제정 부문: 구체화된 기획의 내용(연구기획에 담겨야 할 내용), 우수 연구개발 결과 활용 방안, 연구개발 성과의 분류 및 전문기관별 관리대상, 연구개발 소외지역의 기준, 단계평가·최종평가·평가후속 조치,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절차 등
- 서식제정 부문: 기술수요조사 양식, 연구개발 계획서, 연차실적 계획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서식, 연구개발 결과 최종보고서, 연구개발 결과 최종보고서 초록, 주관연구기관 자체평가 의견서, 연구결과 활용 계획서, 평가위원 등록 서식 및 공동활용 방안,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서 등

III. 연구결과

- 시행규칙 제정범위(제2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제1절)
 - 위임·시행·고시 사항(제2절)

- 시행규칙 제정 입법수요(제3장)
 - 입법수요(제1절)
 - 부처별 연구개발 행정규칙 비교(제2절)
- 시행규칙 제정안(제4장)
 - 주요내용(제1절)
 - 조문별 제정이유(제2절)

IV. 결 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을 마련함.
- 시행규칙안은 시행규칙 제정범위 결정, 입법수요 분석, 부처별 행정규칙 비교 등을 통하여 마련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마련된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5. 06. 01자로 제정이 됨.
- 시행규칙의 제정은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용하던 연구개발 행정 절차, 기준, 서식 등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표준화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음.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Section 1 Background of Research	1
Section 2 Objectives & Contents of Research	2
Section 3 Framework and Method of Research	3
Chapter 2 Legislation of Ministerial Ordinances of National R&D Management	7
Section 1 Principal Contents of Presidential Decrees of National R&D Management	7
Section 2 Mandate, Enforcement & Notification of Presidential Decrees of National R&D Management	8
Chapter 3 Demand(Request) for Legislation of Ministerial Ordinances of National R&D Management	12
Section 1 Demand(Request) of Legislation	21
Section 2 Comparison of Administrative Orders of National R&D Management	3
Chapter 4 Draft of Ministerial Ordinances of National R&D Management ...	61
Section 1 Principal Contents	16
Section 2 Reason of Legislation	26
Chapter 5 Conclusion	71
Appendix	73

목 차

요 약 문	i
CONTENTS	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제3절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3
제2장 시행규칙 제정범위	7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7
제2절 위임·시행·고시사항	8
제3장 시행규칙 제정 입법수요	12
제1절 입법수요	12
제2절 부처별 연구개발 행정규칙 비교	39
제4장 시행규칙 제정(안)	61
제1절 주요내용	61
제2절 조문별 제정이유	62
제5장 결 론	71
부 록	73

표 목 차

<표 1-1> 공동관리규정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의 원인	1
<표 1-2> 연구내용 및 범위	3
<표 1-3> 내용구성 전략	4
<표 1-4> 합의도출 전략: 시행규칙 제정 작업단 구성·운영	5
<표 1-5> 연구 추진체계	6
<표 2-1> 위임사항, 시행사항, 고시사항	9
<표 3-1> 항목별·부처별 연구개발 행정규칙 내용 1: 농림, 과학, 환경, 정보	40
<표 3-2> 항목별·부처별 연구개발 행정규칙 내용 2: 건설, 산업, 보건	53
<표 4-1> 조문별 내용·제정이유	6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¹⁾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부처별로 분산·관리되어 연구프로그램의 기획 및 과제선정, 진도관리와 결과평가, 연구성과의 활용 등에서 다소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근거를 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함)을 ‘01. 12. 19 대통령령으로 제정(‘01. 12. 19)하였고, 최근 ’05. 03. 08에 1차 개정하였다.

공동관리규정 제정의 1차적 이유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원칙과 기준설정이며, 2차적 이유는 행정규칙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법체계적 문제점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관리규정이 제정된 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동관리규정의 효과성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관리규정에서 제시한 원칙과 기준은 개괄적이어서 각 부처에서는 원칙과 기준의 구체화를 위한 행정규칙을 제정·운용할 수밖에 없고, 각 부처별 행정규칙의 제정·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원칙과 기준이 부처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관리규정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원인을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공동관리규정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의 원인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관리규정에서 각 부처에게 작·간접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행정규칙의 성질상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부가 스스로 제정할 수 있음- 공동관리규정이 부처별 차별화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소극적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 부처가 정할 수밖에 없는 조문내용상의 한계가 있음- 각 부처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구체적 기준을 객관화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행정규칙 만능주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p>·예를 들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i)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Process별(기획·평가·관리)로 행정규칙을 제정·운용하는 경우와ii)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Sub-Program별로 행정규칙을 제정·운용하는 경우 각 부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행정규칙 내에서도 중복적 규율방식과 예외적 규율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적용상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음 |
|---|

1) 홍동희(200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행위에 대한 법리적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p. 225 - 228

이에, 공동관리규정을 실질적인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 기준절차 서식 등을 각 부처에 통일적용 할 수 있는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부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의 공동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원칙과 기준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선언적·장식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집행적·실질적 규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수단(시행규칙: 부령)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처마다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이 있지만, 그 추진방법·기준·절차까지도 부처별로 상이하게 정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부처별로 상이한 추진방법·기준·절차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혜자인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본질적인 차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진방법·기준·절차 등을 통일하는 것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목적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가 R&D 정보관리 체제를 체계화할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05. 03. 08) 추진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다.

또, 1차 목적으로부터 파생되는 2차적인 목적은 R&D 추진 부처별 사업특성 및 관리현황을 반영한 새로운 표준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내용은 크게 기준제정 부분과 서식제정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기준제정 부분은 구체화된 기획의 내용(연구기획에 담겨야 할 내용), 우수 연구개발결과 활용 방안, 연구개발 성과의 분류 및 전문기관별 관리대상, 연구개발 소외지역의 기준, 단계평가·최종평가·평가후속 조치,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서식제정 부분은 기술수요조사 양식, 연구개발 계획서, 연차실적 계획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서식, 연구개발 결과 최종보고서, 연구개발 결과 최종보고서 초록, 주관연구기관 자체평가 의견서, 연구결과 활용 계획서, 평가위원 등록 서식 및 공동활용 방안,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표 1-2> 연구내용 및 범위

구 분	연 구 내 용	연 구 범 위
시행 규칙 제정	기준제정 부문	1. 구체화된 기획의 내용 : 연구기획에 담겨야 할 내용 2. 우수 연구개발결과 활용 방안 3. 연구개발 성과의 분류 및 전문기관별 관리대상 4. 연구개발 소외지역의 기준 5. 단계평가 / 최종평가 / 평가후속 조치 6.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절차
	서식제정 부문	1. 기술수요조사 양식 2. 연구개발 계획서 3. 연차실적 계획서 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서식 5. 연구개발 결과 최종보고서 6. 연구개발 결과 최종보고서 초록 7. 주관연구기관 자체평가 의견서 8. 연구결과 활용 계획서 9. 평가위원 등록 서식 및 공동활용 방안 10.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서

제 3 절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1. 추진전략

시행규칙의 제정추진 전략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시행규칙의 내용구성 전략 또는 조문화 추진전략이며, 하나는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추진전략 또는 합의도출 전략이다.

시행규칙의 내용구성 전략 또는 조문화 추진전략은 Manual화 개념 도입, 법체계상 혼란 해소 및 간결성 확보, 결정재량 및 선택재량 사항의 대폭축소, 예외적 사항의 과감한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표 1-3> 내용구성 전략²⁾

구 분	전 략
시행 규칙 제정	○ 공동관리규정으로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공동관리규정의 Manual화’ 개념도입 ○ 상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칙에서 중복규정 함으로 인한 법체계상 혼란해소 및 간결성 확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유지를 위하여 부처의 결정재량 및 선택재량 사항의 대폭축소 ○ 부처별 행정규칙중 공통적인 사항 및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화 - 이유 : 구체적 기준을 행정규칙에 위임할 경우 운용실태의 변화가 없기 때문 - 현행 관리규정 중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예: 계상기준, 평가기준,...) ○ 특정부처의 현실을 감안한 예외적 사항과 사례발생 빈도가 적은 예외적 사항의 과감한 삭제 ○ 공동관리규정시행규칙(부령)의 제정 - 공동관리규정의 조문순서에 따라 실무적인 절차·서식을 시행규칙의 형태로 제정하여 통일
관련 법령 정비	○ 부처별 근거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유도 - 법률에 규정할 사항: 계획수립, 권리와 의무의 주체, 산업재산권, 행정벌, 행정제재 등 - 공동관리규정과 모순 및 충돌되는 조문의 삭제 ○ 부처별 행정규칙의 폐지유도 및 신규제정 자체유도 -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의 전면삭제: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규칙의 제정은 가능하기 때문

시행규칙의 제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또는 합의도출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정 실무작업단’을 공무원, 전문기관 실무자, 산·학·연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하였다. 실무작업단은 시행규칙 제정의견 제시, 토론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홍동희(200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행위에 대한 법리적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 230

<표 1-4> 합의도출 전략: 시행규칙 제정 작업단 구성·운영

구 분	내 용	비 고
구 성	○ 부처 전문기관 15인, 산학연 10인	○ 필요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운 영	○ 월 2회 실무회의 또는 의견수렴 회의 개최 - 간사 및 총괄 : KISTEP	-
회의일정	○ 1차(04. 12월) : 시행규칙중 기준제정 부문 의견수렴 ○ 2차(05. 2월) : 시행규칙중 서식제정 부문 의견수렴	○ 집체회의와는 별도로 E-Mail을 통한 상시적인 의견수렴 창구 마련 - 작업단원 상호간 또는 작업단과 기획연구팀간 ○ 2회(05. 1월/3월)의 Workshop을 통한 심층토론
역 할	부처 및 전문기관의 의견수렴 및 조정	-

※ 시행규칙 제정추진 경과

- 2004. 12. 17: 시행규칙 제정 실무작업단 Kick-off회의 개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제회의실
 - 전문기관 10인, 산학연 3인 참석
 - 시행규칙 제정추진 방법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논의, 시행규칙 제정안 검토의견 수렴
- 2005. 01. 26: 시행규칙 제정 실무작업단 회의 개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제회의실
 - 전문기관 12인, 산학연 3인 참석
 - 시행규칙 제정을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실무작업단을 ①기획평가, ②연구협약, ③정산관리, ④성과관리의 4개 분과로 재편
- 2005. 02. 25: 시행규칙 제정 Workshop 개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제회의실
 - 전문기관 12인, 산학연 3인 참석
 - 4개 분과별 발표 및 집중토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협약, 정산, 성과관리
- 2005. 03. 02 - 03. 08: 시행규칙 제정안 성안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시행규칙 제정안 검토의견, Workshop 발표자료, Workshop 토론내용, 연구개발정보관리기관(KISTI)의견, 연구개발정보관리부서 의견 종합 및 분석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조사지(Interview Schedule)에 의한 사회조사 방법, Forum·Seminar·Workshop을 통한 의견분석, 국내 및 외국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관한 문헌조사(Documentary Survey) 방법, 부처별 행정규칙의 비교법적 연구방법, Mass-Media·입법정책 분석, 입법기술론 등을 사용하였다.

<표 1-5> 연구 추진체계

추진순서	구체적 추진내용	방 법
법제처 심사	- 법제처 심사 설명자료 작성 - 법제처 심사의견 분석; 시행규칙안 수정 ※ 정부조직법 제24조	문헌조사 비교법적 연구 설문조사 Forum Seminar Workshop
↑		
규제개혁위 심사	- 규제개혁위 설명자료 작성 - 규제개혁위 의견분석; 시행규칙안 수정 ※ 규제개혁위 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제24조	
↑		
입법예고(공청회)	-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및 공청회 의견분석; 시행규칙안 수정 ※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 공청회: 행정절차법 제38조	
↑		
관계부처 협의	- 부처협의용 설명자료 작성 - 관계부처 의견분석; 시행규칙안 수정	
↑		
법안 작성	- 필수입법 사항 추출 - 시행규칙안 체계도 작성 - 시행규칙안의 기본방향 및 기본골격 구성 - 조문구성	
↑		
입법수요조사·분석 관계법령조사·분석	- 문헌조사 - 전문가 의견분석	

제 2 장 시행규칙 제정범위

제 1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시행규칙은 과학기술 부령(部令)의 형식으로 제정된다. 부령은 법률 즉, 과학기술기본법 또는 시행령(대통령령)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정 예정인 시행규칙은 대부분 시행령(대통령령)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그 위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050308)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야 한다.

구체적인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절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주요내용만을 아래에서 개관한다.

○ 일정규모 이상 신규사업의 사전기획 의무화(3조제5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구체적인 연구기획을 실시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기술수요조사 실시의 정기화(제3조의2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함.

○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활성화(제10조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준과 달리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제16조의2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금 등 증액(제19조 및 별표 2)

- 종전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고 위 납부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상당액중 50퍼센트 이상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연구개발비중 연구활동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강화(제20조)

- 종전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및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외에 사용한 경우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2년간 제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간 제한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제 2 절 위임·시행·고시사항

‘05. 03. 08 1차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은 그 구체적인 기준, 서식, 절차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위임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규정할 수 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은 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하는 등 행정규칙에서도 일정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임사항은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의 구성·운영(선정·활용) 기준,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기준·방법, 연구개발과제 우대의 기준·방법, 연차실적계획서,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기준, 간접경비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서식,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의 서식, 서류의 제출방법,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대책, 연구개발결과의 배포대상기관, 최종보고서의 종합유통체계 구축, 과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 등, 평가위원후보단의 구성·관리·효율적 사용, 연구장비정보망의 연구장비 등록절차 및 활용방법 등이다.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개발단계의 구분,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의 내용, 국내

외 특허동향 조사 서식, 기술수요조사 서식, 집행잔액 반납의 예외사항, 사용잔액 이월의 경우 이월현황 보고의무, 보칙 등이다.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시사항(지정 포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고전산망, 영 제5조 제4항의 연구개발 소외지역, 연구개발과제 표준분류체계: 과제 고유번호(분류코드), 간접경비 계상기준(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사용실적보고 면제기준(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 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의 기준) 등이다.

<표 2-1> 위임사항, 시행사항, 고시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사항(위임) 시행사항(시행) 지정·고시사항(고시)	비 고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시행) 연구개발단계의 구분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시행)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의 내용 (시행) 국내외 특허동향 조사 서식	
제3조의2(기술수요조사의 실시)	(시행) 기술수요조사 서식	
제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	(위임)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고전산망	*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고전산망 운영: KISTEP 예정
제5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위임)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의 구성·운영(선정·활용) 기준 (위임)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기준·방법 (위임) 연구개발과제 우대의 기준·방법 (고시) 영 제5조 제4항의 연구개발 소외지역	*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1차적인 중복성 검토
제6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위임) 연차실적계획서	
제7조(협약의 체결)	(고시) 연구개발과제 표준분류체계: 과제 고유번호(분류코드)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연구개발 정보 DB 구축을 위한 선행조치
제8조(협약의 변경)	-	
제9조(협약의 해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사항(위임) 시행사항(시행) 지정·고시사항(고시)	비 고
제1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위임)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기준 (고시) 간접경비 계상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 간접경비산출위원회를 통한 간접경비율 결정
제10조의2(간접경비산출위원회)	(위임) 간접경비산출위원회 및 소위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 적 보고 등)	(위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서식 (시행) 집행잔액 반납의 예외사항 (시행) 사용잔액 이월의 경우 이월현 황 보고의무 (위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 (고시)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 절성, 연구비 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 성 등의 기준(사용실적보고 면 제기준)	* 사용실적보고 면제기준: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와 연계한 사용실적보고 면 제기준 마련
제12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위임)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 서의 서식 (위임) 서류의 제출방법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제14조(평가에 따른 조치)	(위임)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 원대책	
제14조의2(연구개발결과의 공개)	(위임) 연구개발결과의 배포대상기관 (위임) 최종보고서의 종합유통체계 구축	
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 물의 소유)	-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16조의2(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위임) 과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위임)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 등 (위임) 평가위원후보단의 구성·관리· 효율적 사용	*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 업 종합관리정보망 운영: KISTEP 예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사항(위임) 시행사항(시행) 지정·고시사항(고시)	비 고
제16조의2(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위임) 연구장비정보망의 연구장비 등록절차 및 활용방법 등	* 평가위원후보단 구성· 운영: KISTEP예정
제1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	
제18조(기술료의 징수)	-	
제19조(기술료의 사용)	-	
제2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제21조(세부규정의 제정·운영)	(시행) 보칙	
부 칙	부 칙	

제 3 장 시행규칙 제정 입법수요

제 1 절 입법수요

1. 기관별 의견

기관별 의견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실무작업단의 구성원이 기관의 명의로 제출한 의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고려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농림기술관리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대창공업(주) 등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의견을 원문 그대로 아래에서 기관별로 제시한다.

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rndall) (영 제4조제3항)

○ 운영목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 및 관련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연구자들이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접근 및 취득할 수 있도록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운영방법

- 각 부처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고전산망」에 관련 정보들을 직접 입력토록 한다.
- 각 부처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 사업관리담당자에게 해당 사업의 입력·수정·삭제 권한을 부여한다.
- 「국가연구개발 사업공고전산망」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운영·관리한다.

○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에서 입력할 내용 및 절차, 시기 등

- 입력내용 : 신규사업공고, 부처별 시행계획, 각 사업 관리규정, 공지사항 등.
- 절차 : 각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내부 절차에 따른다.

- 시 기 : 사업공고사항 확정됨과 동시에 다른 방법(신문, 관보, 홈페이지 등)에 우선하여 입력한다.

(2) 연구개발과제 중복검토 절차(영 제5조 제3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투자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은 연구과제에 대한 중복검토를 과제협약 이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상세 양식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각 기관의 과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중복여부를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중복투자로 판정된 과제는 과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중복투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과제 표준분류체계 (영 제7조 제4항)

- 연구개발 과제관리를 위한 최초협약연도, 사업구분 등을 알 수 있는 과제별 고유번호 부여를 위한 국가연구개발과제 표준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과제 표준분류체계 + 최초협약년도(4자리) + 일련번호
 - * 요청 사항 : 연구개발과제 표준분류체계는 “정부기관코드 + 사업대분류코드 + 사업세분류코드”로 되어 있다. 이 체계에 의하면 정부부처 사업들이 통합되거나 분할될 경우에는 대처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안 “사업대분류코드+사업세분류코드” 또는 2안 “사업대분류코드+ 사업세분류코드 + 정부기관코드”로 체계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4) 연구개발정보 관리 (제 16조의 2 모든 항)

☐ 제()조 (과제·성과정보의 관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행에 따라 연구개발정보중 아래 각 호의 ‘과제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각 정보별 상세항목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요약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 연구과제정보 및 연구수행시 발생하는 과제관련 행정정보
 - 과제 정보
 - 연구수행을 위해 구매한 장비·기자재 정보
 - 사업자 공고, 선정, 진도관리
 - 과제평가정보(선정 평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 제재정보
 - 참여연구인력, 평가위원 정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행에 따라 발생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성과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각 정보별 상세항목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논문)
 - 사업화 성과(특허, 기술료, 사업화 현황)
 - 인력활용 / 양성성과(인력지원, 장·단기 연수지원, 산업기술인력 양성)
 - 국제화 협력성과(인력교류, 기술무역, 국제학술회의 개최, 국제협력기반)
 - 경제사회 파급효과(산업지원, 고용창출)
 - 사업별특성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해 과학기술부 장관은 추가적인 성과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성과정보와 관련하여 1항 및 별도로 지정될 세부항목을 관리할 수 있는 ‘과제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구축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항의 범국가적 현황파악을 위해 1항의 연구개발사업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의 하위 시스템인 ‘국가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조 (과제 및 사업 평가결과의 관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범국가 차원의 국가 R&D 사업기획, 과제선정, 사업평가 및 과제평가, 기술이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타 중앙행정기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평가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평가결과정보는 과제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정보와 과제정보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의 구축·운영관리)

- 영 제 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의 구축·운영 기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업무의 연관성과 시스템 운영 측면을 감안하여 지정한다.

□ 제()조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DB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그 효율적 공동활용을 촉진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의 구체적 구성·운영 기준은 별지 제()호에 따른다.

□ 제()조 (연구장비정보망)

과학기술자재취득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99. 12 폐지)

- 연구장비 등록·DB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별지 서식 추가

- 연구장비 등록서식 : 장비 구입 후 온라인 등록·관리

- * 참고: 연구장비 이력카드

- 연구장비 등록확인서 : 과제 평가시 제출 및 평가 반영

- 연구장비 공동활용실적 : 과제 평가에 활용

- * 참고: 연구장비 구입현황 및 공동활용실적 조사 서식

- 연구과제 기획/선정/평가지 연구장비 구입의 타당성 검토, 활용계획 평가, 중복 투자 방지 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계획서의 “11.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서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11.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메타정보 DB화를 통해 연구장비의 사전적/사후적 관리 강화

- 관계기관 전체 회의 및 개별 협의가 필요하다.

- 과학기술정보 DB 구축 관련기관

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개정안 제14조의2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의무사항 추가 및 필수 배포대상기관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추가해야 한다.

-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보고서의 물리적 아카이빙 및 장기보존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결과물의 공개에 있어서 납본의무를 강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장기보존이 해당기관의 고유 업무인 기관, 즉 의무납본기관)과 결과물을 단순히 배포하여야 할 기관(장기보존이 해당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기관, 즉 배포대상기관)으로 배포기관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또한 향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물리적 아카이빙 뿐만 아니라 전자적 아카이빙도 필요하며 전자문서는 전자적 아카이빙에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보존이 해당기관의 고유 업무인 기관(즉 의무납본기관)에는 전자문서의 의무적 납본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영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결과의 배포대상기관은 별표()와 같다.”의 시행규칙의 배포대상기관을 ‘필수배포처 및 의무납본기관’과 ‘배포대상기관’으로 구분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의 전달유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추가해야 한다.

<별표> 연구개발결과의 배포대상기관 및 의무납본기관

필수배포처 및 의무납본기관	부수	전자문서	주 소	우편번호
1. 국회도서관	3	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150-703
2. 국립중앙도서관	3	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137-702
3. 정부기록보존소	3	1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20	302-701
			정부대전청사 2동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	1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52번지	305-806
배포대상기관	부수	전자문서	주 소	우편번호
4. 해당 연구개발사업 소관 부처	3	0	-	
5. 해당 연구개발사업 소관 전문기관	3	0	-	
6.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곳	-	0	-	

○ 표준적 지침에 의한 연구개발결과의 종합유통체제 구축 관련 조항 추가

- 연구개발정보의 표준화업무(제16조2 제2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과의 연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정보표준화위원회’ 설치·운영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 각 중앙행정기관이 제출받은 정보(제12조 제1항 등)를 DB로 구축할 때에는 관련정보의 호환성 및 활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에 따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 제()조 (연구개발정보의 표준화)

- ①영 제1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종합유통체제 구축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개발정보 표준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정보표준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영 제1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에 따라 구축한다.

(2) 개정안 제16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영 제16조 제2항의 “연구개발정보”에 ‘인력정보’를 명시

➡ 제()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영 제16조의2의 연구개발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요약서
2.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평가현황
3. 특허, 논문, 기업화 실적 등 성과현황
4. 연구개발 참여인력정보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관련 정보

※ 필요시, 인력정보의 대상범위 및 양식 등을 추가

(3) 기타 (서식관련 검토의견)

➡ 연구사업 및 과제에 대한 일반 정보는 많이 들어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데이터 항목이 없어 과제 수행 초기에 이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을 경우 과제의 생성시점부터 정보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수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 고려대학교

(1) 조문별 의견

조 문	수 정 안
제9조 ①항	①영 제11조 서식과 같다. 단, 카드제연구과제(rndcard연구과제)는 동시스템(rndcard.re.kr)에 입력된 내용으로 사용실적 보고를 갈음한다.
제9조 ②항	②영 제11조 우대할 수 있다. 단, 동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연구개발비 잔액 및 이자)	1. 과제당 집행잔액이 수입으로 처리
제10조(연구개발비 잔액 및 이자)	④동 연구개발비의 발생 이자는 위 ① - ③과 동일하게 준용하여 처리한다.
연차실적계획서	총괄용 및 세부과제용 표지에 과제기본정보를 추가 I. 실적 1. 다. 평가의 착안점 (연구개발계획서와 중복) -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II. 계획 4.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연구개발계획서와 중복) -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7. 연구비 집행실적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서식으로 갈음 - 이중 보고로 삭제 II. 계획 5. 참여연구원 현황 가. 세부책임자(총괄) 나. 연구원(세부) (연구개발계획서와 중복) -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	○ 중복성의 판단요소(추가) - key word 검색시 90% 이상

※ 과제기본정보

과제 번호		
연구과제명	국 문	
연구책임자	한글 성명	
	소속 기관	
	학과(부서)	
연구 기간	년	

(2) 기타의견

각 부처별, 사업별로 상이한 간접비에 대한 정의를 일원화해야 한다. → 산자부 산기반 사업 간접사업비(기술정보수집활동비, 제잡비)는 과기부 사업 등에서는 직접비(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수용비및수수료) 성격이고, 기관 흡수 O/H 간접비는 없음 - 간접비 지원 기준을 대학, 산업계, 학계를 다른 기준으로 적용 → 대학 및 출연연구소는 기존대로 (인건비+ 직접비)× % 적용 → 산업계는 간접비 기준을 최소화 또는 없는 것으로 적용

(3) 정부연구개발사업 분류코드(생략)

라. 포항공과 대학교

(1) 조문별 의견

조 문	수 정 안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고유번호 부여)	(협약의 체결) 영 제 7조 제2항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대학총(학)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기관의 장을 말하며, 다만, 대학총(학)장이 요청시 산업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산학협력단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 대학은 대학내에 또다른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기관장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8조(간접경비산출위원회의 운영)	제8조(간접경비산출위원회의 운영)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 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산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연구기관의 성격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아래 위원중에서 11명 내외.... ② -----, 위원회의 위원은 1.과학기술부..... 2. 현재와 동일 * 위원회 위원의 수가 너무 많아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게 되고,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위원을 관련 중앙행정부처에서 선정하여 운영
제()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연구개발비의 관리) 영 제 10조 제 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기관은 필요시 연구관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연구비통합계좌에 연구비를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다. *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제가 확정되고 연구기간이 시작되어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연구비 통합계좌에서 이미 입금되어 있는 연구비를 선집행 할 수 있게 되어 연구의 효율성증대 및 연구관련 통장의 간소화로 행정부담 경감 (연구개발비의 비목 변경)영 제 10조 제 8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 변경의 경우에 인건비 또는 위탁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연구비 비목변경이 가능함을 명시

(2) 선행특허조사서

과 제 명		
관련특허명	기술의 개요	본과제와 관련성
* 특허 공개번호 등 서지사항	* 해결코자 하는 목적이 동일한 특허의 핵심을 기재	

(3) 기타 의견

-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정부연구개발비 관리제도 운영방안”의 내용과의 상충문제를 파악하여 부처간의 의견 조정이 있어야 한다. (예: 간접경비 산출위원회의 운영주체, 연구비목별 계상기준 표준화, 간접비 산출기준 등) - 대학은 산학협력단이라는 특수법인이 있어 연구관리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공동규정과 상충문제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구관리인증제가 본 시행규칙과 병행하여 같은 시기에 확정되어 공동규정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 계획서 양식 등은 연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

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 지침이 현재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프로그램별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각종 규정을 대체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검토하였으며, 본 지침에서 가능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용하여 부처별로 또 다른 하부지침의 제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보완되어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 집행잔액

10조 ②항 1.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

⇒ 수입으로 처리하여 연구개발재투자에 사용

※ 사유 : 집행잔액의 사용용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용도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

- 명칭을 계획서로 통일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서(신청, 협약)으로 수정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인적사항중 주민등록번호 기입에 대한 보완필요

- 연구원 편성표상의 인적사항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중 인건비 작성양식이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 참여시작년월과 참여종료연월 삭제 필요

※ 사 유

- ① 신청서와 계획서의 차이가 없고, 공동관리규정에 신청서에 관한 사항이 없음.
- ② 참여연구원 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된 계획서 등의 자료가 외부에 누출될 경우 오용 및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높음
- ③ 동일한 내용의 중복 입력에 따른 낭비요인 제거
- ④ 연구계약의 지연, 연구사업의 진도에 따른 참여시기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당해연도 연구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재하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움

○ 자체평가 의견서

- 연구개발실적의 평가 등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유 : 기준이 없을 경우 평가등급에 의미를 부여하기 곤란함

○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변경

- 비목의 신설, 비목간 변경, 비목의 명칭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정의가 필요

※ 사유 : 개정령(안) 10조 ⑩항에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공동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특히 비목의 명칭이 다르고 세분화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개발기술의 일부를 실시할 경우의 기술료 계산,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기술료 징수 여부, 기술료 관련 분쟁 발생시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명시 필요

※ 사유 : 개발기술의 이전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기술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부도 및 폐업, 기술료 징수 관련 분쟁발생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바. 한국화학연구원

(1) 현 황

○ 각 부처 연구사업마다 각각의 연구사업 규정과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행과제, 협동 및 위탁과제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수행과제에 대한 사용실적보고서 및 협동(위탁)과제에 대한 정산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 사용실적보고서류 :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연구개발비사용명세서,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보고서, 연구기간중발생이자 사용내역서 등.
 - 연구비카드시스템 : 모든 수행과제에 대하여 연구비카드제가 적용되며, 연구수행기관은 정산시 연구비카드시스템상에 연구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여야한다.
- 정밀정산의 예
 - 산업자원부 연구사업 : 전 과제 대상
 - 과학기술부 연구사업 : “C등급”이하의 평가를 받은 과제 및 무작위 추출(전체과제의 5%이상)된 과제
 - 환경부 연구사업 : 전 과제 대상
- * 정밀정산 방법 : 증빙서류 사본 일체 제출 및 필요시 현장검증 등 실시

(2) 문제점(애로사항)

- 각 부처 연구사업마다 각각의 연구사업 규정과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로가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다양하여 연구비 집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연구사업의 규정과 지침에 대한 해석도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 정산관련 규정의 경직된 해석으로 인해 연구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연구수행에 따른 연구비 집행 시 불인정·반납을 없애기 위해 사소한 것 까지 하나하나 질문하고 집행해야 하는 번거러움 발생)
- 주관연구기관에서 협동 및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있어 주관연구기관의 정산업무 가중 및 정산에 대한 업무부담이 너무 크다.
- 정밀정산과제의 증빙서 copy에 대한 업무부담이 크다.
- 연구비카드시스템에서 연구비 사용내역 입력에 대한 업무부담이 크다.
(모든 수행과제에 대하여 연구비카드제가 적용되어, 정산 시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연구비 사용내역을 입력)

(3) 건의사항

- 전 부처의 통일화된 연구사업규정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 연구비인증제도의 전 부처 시행과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

사.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의 제정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사업 기획시 선행연구의 검토, 특허동향에 대한 검토 등이 매우 필요하다. 연구관리전문기관 중에는 이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요망된다.
- 공동관리규정은 연구자의 편의 외에도 연구관리의 효율성 제고도 주요 목적의 하나 이므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과 기관 위상, 업무의 범위·권한과 의무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는 행정부처 중에는 최소한의 실체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예, 해양부, 기상청 등)
-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은 모든 산·학·관·연이 만족하도록 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 기업 및 연구기관이 편리하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연구개발 참여자(기관)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규정과 양식의 통합이 중요하나, 동시에 간소화를 통한 효율화도 매우 중요하다.
 - 농림기술관리센터의 경우 최근 5년동안 연구개발사업 참여자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규정과 양식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한 바 있다.
 - 시행규칙의 공통양식은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양식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분량이 많으며(약 2~3배), 농림기술관리센터의 간소화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다.
 - 연구기관(연구개발자)이 이 양식을 작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해당 항목만을 기재할 수 있음에도 연구과제제출기관의 입장에서는 모든 항목을 상세히 기재하려 할 것임)

<농림기술관리센터가 각종 규정 및 양식 간소화 사례>

- 연구과제계획(신청)서 제출 관련 : 연구과제계획(신청)서 제출 공문 폐지, 세부과제별 연구과제계획(신청)서 폐지, 비목별 소요명세서 폐지 등 8개 항
- 연구과제 협약 관련 : 농림기술개발사업 전체 과제에 대해 다년도협약 도입으로 연차실적계획서를 대폭 간소화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관련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완전 on-line화 및 시스템화(연구비 카드사의 데이터와 대학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연동함으로써 데이터 입력의 필요가 거의 없고, off-line 서식 제출 없음), 차년도 이월금액 처리란 흡수 통합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사업의 공통적 사안을 통합하는 노력도 필요하나, 각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과제계획(신청)서 상에 각 사업이 요구하는 특별항목을 삽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기타 시행규칙 조문 및 서식 개정의견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는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초연구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삭제 “최초로”)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를 말한다.

(※ 기초·응용·개발 등은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적 용어를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고유번호 부여) 영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별 고유번호 부여를 위한 “표준과제코드”는 별표 ○의 기준에 따른다.

(※ 연구과제의 고유번호를 일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간 중복성이 없는 엄격한 분류가 필요하나 이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와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임)

제14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영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결과의 배포대상 기관은 별표 ○과 같다.

②영 제1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의 종합유통체계 구축은 영 제2조 제9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koridi.kr)”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정보 제공을 말한다.(필요성 검토)

(※ 연구개발 결과(또는 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이 해야 하는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 해야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자의 경우 등록에 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핵심기술의 보안 또는 해외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후자의 경우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사업별·활용유형별로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

<별첨 2> : 양식

1. 사업과 세부사업, 과제와 세부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의 위상과 개념이 모호하여 연구과제계획(신청)서가 혼동될 우려 있음(과제와 세부과제 계획서 양식 첫 페이지가 동일하게 되어 있음)
2. 세부과제의 규모에 따라서는 연구과제계획(신청)서의 제출여부를 부처별 판단에 맡기는 방안 필요
3. 세부과제 연구과제계획(신청)서의 14번 항목인 신청(또는 희망)기업의 현황 자료는 중형 규모 이상의 과제에 한하여 받는 것이 바람직함(자유응모로 제출하는 1~2억원/1~3년의 과제는 생략)
4. 연구과제 평가단 구성 및 운영기준에서 평가위원 제외대상의 범위가 모호하거나 실제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친인척지간, 사제지간 등), 분야가 소규모이거나 신생분야인 경우에는 전문가가 적어 평가위원 위촉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
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서식에서는 다년도 협약에 따른 차년도 이월금액 작성란이 필요함
6. 위탁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에서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는 인정되지 않음이 바람직함
7. 연구성과활용계획서에서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활용내역을 삽입하기 어려움
 - 농림기술개발사업 중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기술이전교육 등을 중요한 연구성과활용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검토중인 서식에는 이에 대해 작성할 내용이 매우 제한적임

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 연구관리시스템과 서식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개발 중(개발기간 : 2003년 8월 ~ 2005년 2월; 개발비용 : 7억)인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은 타부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2003년부터 추진하여 2005년 2월 완료 예정이다.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 서식(이하 “기존서식”이라한다.)을 시행규칙안의 서식(이하 “신규서식”이라한다.)으로 변경할 경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이미 개발한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은 기존서식(hwp 파일)을 web에서

upload하여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하여 DB화 하는 시스템이다.

- 이를 신규서식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XML 매핑 화일(한글화일→XML→DB화), Database 구조 등의 추가개발이 필요하므로 신규서식을 적용할 경우, 향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자체비용으로 관리시스템을 다시 개발하여야 하는 실정이다.(예상 개발기간 : 약 1년; 예상 비용 : 약 1.5억)

(대안 1)

- 기존서식과 신규서식을 비교하여 추가되는 data만을 기존서식에 추가하는 방법 (DB 수정 및 추가, 관리화면 수정)
- 이 경우 신규서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기존서식에서 수용하고 단지 신규서식과 서식 format만 다르게 됨.(예상 개발기간 : 약 4개월; 예상 비용 : 약 0.5억)

(대안 2)

- 신규서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을 제작 배포하여 이를 각 연구관리 전담기관에서 사업특성에 맞게 추가 개발하여 사용하는 방법(각 전문기관에서 사업특성에 맞는 추가 개발이 필요)

※ KISTEP에서 통합개발하여 각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토록 지원 요망

(2) 조문별 의견

조 문	수정안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구분)	제2조는 단계별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를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장비 제작, 연구인력양성 사업 등 사업성격이 상이한 R&D인프라구축사업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칙신설	보 칙 16조 () 각 부처별 사업특성에 따라 본 지침의 서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분야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각 부처별로 기술분류가 상이함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으로 기존 기술분류체계를 재구성하여 이를 각 전문기관에서 활용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및 운영기준	평가위원 선정원칙 중 “해당분야의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현장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가”로 추가 필요(해당분야 현장 실무자의 참여가 곤란해짐)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기준	- 중복성 판단 이후의 조치사항으로 아래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 부처별 연구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는 효율적 연구추진을 위해 향후 중복성 논란시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등급 부여 및 조치	나. B등급과제 : 2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공통적으로 지적인 부정적 의견(Negative comment)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연구수행시 반영 ⇒ 2인 이상의 전문가가 부정적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주관적일 수 있으며 또 공통된 의견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효과 보다는 업무만 과중 될 소지가 많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식	- 서식 항목중에 “변경금액”란 추가 - 상기의 변경부분을 모든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위탁 포함) 서식에 준용 ※ 검토의견: 20%이상의 증액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으므로 당초계획금액과 변경된금액 부분이 명기되어있을 필요가 존재함

조 문	수정안
연구개발비 잔액 및 부당집행분 회수기준	◦ 연구개발비 잔액 회수기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종합관리계좌에 입금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종합관리계좌에 입금 ※ 연구종료 즉시 협동·위탁연구기관 사용잔액 및 이자발생분을 파악하여 전문기관에 이체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카드승인 후 카드대금청구가 종료이후에 발생하며, 또한 차후 부적정 집행 및 종료 후 이자에 대한 재 입금 사항 등이 발생함
기술요약서	◦ 기술요약서의 기술분야, 기술의 용도 등은 각 부처 사업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술분류 및 용도 선택이 가능해야 함. 제시된 기술분류 및 기술의 용도에서 건설분야 기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음
연구개발결과의 배포 대상기관	◦ Off-line에 의한 연구결과 보고서 필수 배포처는 국공립 도서관 및 정부부처 위주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은 On-line으로 관련기관에 PDF 파일로 송부하거나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고서를 down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등급 부여 및 조치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기분 및 우대방법	◦ 우대방법 중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등급 부여”시 S등급일 경우, 평가 후 2년간 5점을 부여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기준 및 우대방법” 중 선정평가지 가점 3점을 주게 되어 있음. 이 경우 최고 8점의 가산점을 받게 되어 가점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비 집행실적

(단위 : 원)

항 목	비 목		계획금액		변경금액		사용액		잔 액		비 고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지 급 용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외부인건비	현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현 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현 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재료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현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현 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시작품제작비	현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현 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여 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술정보활동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구활동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간접비	·간접경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구개발준비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과학문화활동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구실 안전관리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소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구사업비 총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주) 연구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교란에 작성기준일을 기재함

※ (서식 항목 중에 “변경금액”란 추가)

상기의 변경부분을 모든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위탁 포함) 서식에 준용

자. 대창공업

- 기본틀(조항)은 변경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각 부처의 의견에 따르겠다.
- 또한 지원 과정에서의 간편성과 평가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규정이 되길 바란다.
- 서식은 간략하게 하되 연구개발부처 및 특성에 맞추어서 변경가능케 하여야한다.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도 달라야하기 때문..)
- 시행규칙안의 자료는 가능한 많은 기관들의 양식을 다 반영하였기 때문에 매우 세분화되어있어서 계획서 작성상 애로점이 많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된다.
- 서식항목들은 개정안과 같이 하되, 표의 내용을 간단하게 구분하고, 과제 또는 부처의 특성에 맞추어, 각 항목별로 주석을 달아 작성항목과 비작성항목을 나누어 표시해야 한다.

2. 입법예고 접수의견

입법예고 접수의견은 시행규칙 제정안이 성안된 이후 과학기술부에서 입법예고 하여 접수한 과학기술계 기관별 의견이다.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국대학연구처장협의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등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음 기관별로 제출된 의견 원문을 제시한다.

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행규칙안	검토의견	사 유
제4조①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중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 활동비 항목	- 각 항목에 대한 총액만 기술	정산처리 시 영수증으로 사용내역 확인 가능 - 사전계획이 변경 등에 대한 자율성 부여필요
제6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 연구비 세무적 처리절차 추가필요	

나. 전국대학연구처장협의회

시행규칙안	검토의견	사 유
제6조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 개발비의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인 건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참여율은 학사과정은 50%, 석·박사과정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1. 학사과정 : 400,000원(참여율 50%) 2. 석사과정 : 800,000원(참여율 70%) 3. 박사과정 : 1,200,000원(참여율 70%)	제6조⑤ —————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800,000원 2. 석사과정 : 1,500,000원 3. 박사과정 : 2,000,000원	학생의 경우에도 참여 율을 100%까지 인정 해주어야 함
제6조⑥ 영 제10조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 비의 간접비 중 —————사용용도 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하며, —————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규정의 표현이 모호하여 해석의 어려움이 있음	비용이월 가능 여부가 모호하여 자체 연구비 관리지침과 상충할 여 지가 있음
제6조⑨ 영 제10조제7항 규정에 의해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 —————.	삭제	연구비 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지나 친 규제임
제8조③ —————. 다만 해당금 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 또는 간 접비의 사용잔액은 예외로 한다.	제8조③ —————. 다만 해당 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 우 또는 간접비의 사용잔액 은 예외로 한다.	은행수수료 인상, 행 정효율 등을 고려 사 용잔액 처리예외 금액 을 상향조정할 필요
제8조⑤ 관련 (별표4) 연구개발비 사 용잔액 회수기준 중 -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연 구개발에 연구과제화하여 재투자 하지 않았거나, —————. 다만, 연구개발재투자의 경우 해 당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투자 계획을 수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에는 회수하지 아니함.	연구기관에서 연구비이자내역을 파악하고 동 금액만큼 자체연구 지원사업으로 사용한 근거가 있 는 경우, 이자분을 반납하지 않 아도 되는 것인지 내용이 모호함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시행규칙안	검토의견	사 유
제6조⑤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외부인건비 중-----. 1. 학사과정 : 400,000원(참여율 50%) 2. 석사과정 : 800,000원(참여율 70%) 3. 박사과정 : 1,200,000원(참여율 70%)	제6조⑤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외부인건비 중-----. 1. 학사과정 : 600,000원(참여율 50%) 2. 석사과정 : 1,000,000원(참여율 70%) 3. 박사과정 : 1,500,000원(참여율 70%)	학생인건비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우수인력 활용 촉진
제8조③----- -----, 다만 해당금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 또는 간접비의 사용잔액은 예외로 한다.	제8조③----- -----, 다만 해당금액이 1,000,000원 이하인 경우 또는 간접비의 사용잔액은 예외로 한다.	반납액보다 수수료 및 행정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
제15조(연구장비정보망의 연구장비 등록절차 및 활용방법 등)----- -----연구장비 정보망에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장비정보망의 연구장비 등록절차 및 활용방법 등)----- -----연구장비 정보망에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구입한 연구장비명 3. 연구장비의 제작사 및 제조국 4. 연구장비의 활용가능 용도 5. 연구장비 가격 등	1.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 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장비의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예 및 활용계획 5. 연구장비의 이용절차, 이용료 등 ②전담기관은 영 제16조제5항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등록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하고, 제1항에 의거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등록받은 연구장비 정보를 활용·확산에 용이하도록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장비의 확보·고도화 및 공동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연구장비등록정보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장비 등록시 필수입력사항을 명시 ○ 연구장비 등록 및 활용방법에 대한 세부운영규정 제정·시행 - 구축된 연구장비 정보의 활용·확산 -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의 역할 구분

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구비 구성에 있어 간접비 확대로 직접비가 축소되어 연구수행에 차질 발생이 예상되므로 규정 개정후 연구비의 대형화가 꼭 필요함

마. 한국천문연구원

시행규칙안	검토의견	사 유
제2조(연구개발단계의 구분) ----- -----. 1. 기초연구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u>자연현상 및 관찰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u>”를 말한다. 2. 응용연구란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u>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위한</u> 독창적인 연구”를 말한다. 3. 개발연구란 “기초·응용 및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u>인용하거나</u>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를 말한다.	제2조(연구개발단계의 구분) ----- -----. 1. 기초연구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u>우주 및 지구의 자연현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행해지는 순수이론 또는 순수실험 연구</u>”를 말한다. 2. 응용연구란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이를 주로 실용적인 분야에 <u>접목시키거나 새로운 응용하기 위한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u>”를 말한다. 3. 개발연구란 “기초·응용 및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u>충분히 활용하여</u>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u>효과적으로</u>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를 말한다.	연구개발단계의 구분의 정의에 있어 각각의 정의가 불분명 또는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고찰을 다시 하는 것이 필요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시행규칙안	검토의견	사 유
제11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①영 제 1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연구 개발결과의 배포대상기관은 별표5와 같다.	제11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①영 제 1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결과를 별표5와 같은 필수 배포기관에 의무적으로 납본 및 배포하여야 한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적 납본 및 배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국무총리 지시 1995-18호, 1995.11.19)
별표5 연구개발결과의 필수배포대상 기관	○ 전자문서 배포 병기명시 필요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배포되어야 하는 부수 명시필요	전자적 아카이빙 병행필요
③영 제14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이 운영하는 최종보고서의 종합유통체계는 영 제16조의2제2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연계된 시스템을 말한다.	③영 제14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이 운영하는 최종보고서의 종합유통체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는 국가연구보고서 종합유통망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명시필요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4-1호
	(추가)제00조(연구개발 인력정보 등록 및 관리)①연구개발책임자는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과제 책임자 및 참여연구	
	원 등 과제와 관련된 인력정보를 연구사업이 선정된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는 연구개발인력정보 종합유통망에 각 호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내 24개 기관의 인력정보를 메타DB를 통해 연계하여 국내 최대규모의 과학기술분야 인력정보를 종합적으로 유통하는 체제를 운영중임

사. 한국해양연구원

시행규칙안	검토의견	사 유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⑤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사·석사·박사 _____ .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⑤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외부인건비 중 대학이 연구수행기관인 경우 학사·석사·박사 _____ .	적용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행규칙안	검토의견	사 유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⑤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사·석사·박사과정 <u>학생의 인건비</u> 는 _____ (단서 신설)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⑤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사·석사·박사과정 <u>학생의 월인건비</u> 는 _____ 단 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별도의 급여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인건비의 기준을 월 인건비로 명문화할 필요 ○ 기관의 특성이나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영 제1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과제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호의 연구개발과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별 소속기관, 주민등록번호 및 과제별 참여율 4. (생략)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_____ 1. (생략) 2. (생략) 3. <삭 제> 4. (생략)	○ 제1,2호와 중복

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시행규칙안	검토의견	사 유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⑤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인건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u>계상하고, 참여율은 학사과정은 50%, 석·박사과정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u>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⑤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인건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u>계상한다.</u>	학생의 참여율 제한으로 외부인건비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⑨영 제10조제7항 규정에 의해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⑨영 제10조제7항 규정에 의해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 주관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과제별 편철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짜별로 편철하고 있음 ※ 필요시 과제별 자료는 MIS를 통한 예산집행내역 산출 가능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와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 <u>날인하여야 한다.</u>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u>구비하여야 한다.</u>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2-2호) 및 연차실적·계획서(별지 제3-2호)	내부인건비 참여율 현황 중 국가 연구개발사업만 기재	정부 및 공공수탁사업의 포함은 비현실적임

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행규칙안	검토의견	사 유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⑩제6항에 의한 증빙서류는 ----- _____.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⑩제9항에 의한 증빙서류는 ----- _____.	

시행규칙안	검토의견	사 유
(별표4)연구개발비 부담집행분 회수기준 - 계속과제의 경우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 —————.	(별표4)연구개발비 부담집행분 회수기준 - 계속과제의 경우 —————타당한 사유로 사전승인된 경우 또는 원인행위를 하고 —————. —————.	연구시설이나 시작품제작 등의 집행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승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고기간 이후라도 인정필요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2-2호) 및 연차실적·계획서(별지 제3-2호)	내부인건비 참여율 현황 중 국가 연구개발사업만 기재	정부 및 공공수탁사업의 포함은 비현실적임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⑩제6항에 의한 증빙서류는 -----.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⑩제9항에 의한 증빙서류는 -----.	
(별표4)연구개발비 부담집행분 회수기준 - 계속과제의 경우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 —————.	(별표4)연구개발비 부담집행분 회수기준 - 계속과제의 경우 —————타당한 사유로 사전승인된 경우 또는 원인행위를 하고 —————. —————.	연구시설이나 시작품제작 등의 집행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승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고기간 이후라도 인정필요

카. 산업기술연구회

시행규칙안	검토의견	사 유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관리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있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비관리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있으며, 이 경우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채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영 제10조제7항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비목변경의 경우에 전체 연구개발비의 20%이내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영 제10조제8항과 해석 모호

※ 연구비 정산업무를 전문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을 시행규칙상에 명확히 할 것 건의

제 2 절 부처별 연구개발 행정규칙 비교

부처별 연구개발 행정규칙은 연구개발 행정의 실무적인 기준, 절차, 서식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시행규칙은 이러한 실무적인 기준, 절차, 서식 등의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추진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현재 부처의 행정규칙을 일정한 항목별로 상호 비교하는 것은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처별 행정규칙의 상호비교를 통해서 발견되는 주요 사항들은 시행규칙 제정의 입법수요로서의 의미도 아울러 가진다.

부처별 행정규칙 비교는 A. (시)연구개발단계의 구분, B. (시)국내외특허동향조사의 내용, 서식, C. (시)국과위신규사업 심의제출서식, D. (시)기술수요조사서 서식, E. (고시)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F. (위)연구개발계획서 서식, F'. * 기술분류체계, G. (위)평가위원 선정활용 기준, G'.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운영 기준, H. (위)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 I. (위)연구개발과제 우대의 기준 및 방법, J. (고시)연구개발 소외지역, K. (위)연차실적계획서, L0. (위)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기준, L1. 기업부담 연구비에 대한 비목제한 등 세부 규정사항(현물인정 비목), L2. 대학 참여인력의 인건비, L3. 간접비 항목별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사항, L4.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의 프로그램 정의, L5. 연구개발비 관리 중 연구통합계좌, L6. 비목별 기관/연구자 분리 관리 기준(기관공통관리비목, 개별관리비목), L7. 연구개발비 사용 후 세부 증빙자료 및 보존 기간, M. (고시)간접경비 계상기준, N. (위)간접경비 산출위원회의 구성·운영, O. (위)사용실적보고 서식, P. (시)집행잔액반납의 예외사항, Q. (시)사용잔액 이월현황 보고의무, R. (위)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S. (고시)연구비 집행관리절차의 적절성, 연구비 관리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의 기준, T. (위)최종보고서?요약서, 자체평가 의견서, U. (고시)연구개발 과제요약서의 전산입력 방법, V. (시+위)연구개발 평가등급 부여기준 및 조치방법, W. (시)연구개발 평가백서 발간원칙, 백서의 내용, X. (위)연구개발결과의 배포대상기관, Y. (위)최종보고서의 종합유통체계 구축, Z. (위)연구개발정보의 포함사항 등 35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비교대상 부처는 농림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部)로 한정하였다.

비교대상 행정규칙은 연구개발 행정의 실무적 기준 중에서 최상위에 위치하는 처리규정 및 운영요령 수준의 규정으로 한정하였다.

아래에서는 2개의 표로 분리하여 항목별·부처별 연구개발 행정규칙의 주요내용을 제시한다.

<표 3-1> 항목별·부처별 연구개발 행정규칙 내용 1: 농림, 과학, 환경, 정보

구 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A.(시)연구개발 단계의 구분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 발연구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 발연구	-
B.(시)국내외특 허 동 향 조 사 의 내용, 서식	-	-	-	-
C.(시)국과위신 규사업 심의제 출서식	-	-	-	-
D.(시)기술수요 조사서 서식	-	-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 정 제15조(연구과제의 발 굴): 기술수요조사의 근거	-
E.(고시)국가연 구개발사업 공 고전산망	-	-	-	-
F.(위)연구개발 계획서 서식	1. 기술분류표를 별도로 제시안함 2. 계획서는 반드시 인 터넷으로 제출함 3. 계획서는 30 Page 이내로 작성 4. 총괄용과 세부과제 용 구분안함	1. 총괄용과 세부과제용 으로 구분 2. 대중소 기술분류표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표와의 조건표 제시 3. 국가기술지도(NTRM) 를 기초로하여 세부과 제별 기술경로도 작성	1.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구분칸 제시 2. 연구책임자 30%이상, 참여연구원 20%이상 참여원칙 3. 계획서는 100 Page 이내로 제한 4. 사업화 계획 구체화 5. 국가기술지도상의 분 류,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상의 분류 표시 6. 위탁기관, 참여기업 관리방안 7. 참여연구원별 업무분 장표 구체화 8. 참여연구원별 연구업 적 제시 9. 연구결과 홍보, 교류, 활용방안	-
F'. * 기술분류 체계	-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술 분류표	1. 6T 관련 기술분류 2. ET(환경기술)중의 세 부기술 분류 3. 국가기술지도(NTRM) 상의 분류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 류상의 분류	-

구 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G.(위)평가위원 선정활용 기준	-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2. 선정평가 단계평가 주체 : 산·학·연 전문 문가로 구성된 7인 이 상의 평가위원 또는 별도로 구성되는 전담 평가단 - 평가위원 구성방법 : 평가위원은 전문기관 의 장이 전문가 pool 에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해당기술분야 의 전문가를 지명하 여 평가위원으로 선 정할 수 있음 4. 단계최종평가 단계 평가주체 : 전담평가단 또는 산·학·연 전문가 - 평가의 전문성 및 연 속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전담평가단, 선 정평가 또는 진도관 리 참여 전문가를 평 가위원으로 우선 선 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필요한 경 우에는 다른 전문가 및 해외전문가를 활 용할 수 있음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리지침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 평 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산· 학·연 ·관 전문가로 구 성, 위원은 관리기관 전문 가DB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사 업 및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해당기술분야의 전 문가를 위촉, 평가위원회 위원구성 및 해당평가에서 제외(평가 대상과제의 주관 및 참여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기타 평가의 공정 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전 문가)
G'. 평가위원 후 보단 구성운영 기준	-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공정성 제고] ·객관성(Generality) 제고 -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과제의 선정평 가, 진도관리, 최종 (단계)평가, 추적평가 등에 활용되는 전문 가는 연구개발사업 평가단에 등재된 인 사 중에서 선정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리지침 제3조(전문가 DB 및 기술코드 관리), 제4조 (전문가 등록), 제5조(전문 가 신용도 관리), 제6조(전 문가 삭제)

구 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G.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운영 기준		·전문성(Expertise) 확보 - 세부 기술분야별(최소한 35개 중분야)로 약 150명 정도의 핵심인력을 유지 - 기술의 세분화 추이를 감안, 전문가별로 3~4개의 전공 및 활동분야 Keyword를 반영 - 해당 기술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가중 연구업적이 뛰어난 인사로 구성 ·공정성(Fairness) 유지 - 해당 사업별로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도록 구성·운영 - 평가자 상관관계 검색시스템 도입·운영		
H.(위)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	농림기술개발사업 관리기준 제8조(사전검토): 유사 중복성 검색 수행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2. 선정평가 단계 [사전검토] (서식 2-1) - 전문기관은 연구과제 신청서를 대상으로 연구과제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결과(2002.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p. 22: 중복가능여부 판단기준	-	-
I.(위)연구개발과제 우대의 기준 및 방법	농림기술개발사업 관리기준 제4조(참여우대): 농업인, 지도기관, 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최근 3년내 우수한 결과를 낸 연구자에 대한 우선지원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가점부여 항목 감점부여 항목 기타 가감점 부여항목(예시) 평가등급별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 성실한 실패의 인정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기준 등): 공동 연구과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과제, 최근 3년내 우수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하는 과제등에 대한 우대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

구 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I.(위)연구개발과제 우대의 기준 및 방법	제11조(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가점의 총점은 5점이하, 중복적용 불가 제37조(연구성과활용 우수과제에 대한 우대 등): 성과활용 평가결과 우수과제의 우대, 농업과학기술상 수상자 및 기타 공로자에 대한 우대			
J.(고시)연구개발 소외지역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중점지원대상 분야): 연구계·학계·산업계 등의 공동참여에 의한 협동연구 및 중소기업 참여과제와 지방(서울, 인천, 경기 제외)소재 연구기관 추진과제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	-	-
K.(위)연차실적 계획서	1.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작성 2. 중요 변경사항 작성	1. 연구성과 활용 현황표 작성 2. 구매금액이 1억 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작성 3.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작성 4. 중요 변경사항 작성	-	-
L0.(위)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기준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 및 정산기준 제11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12조(이자수입 등의 처리), 제13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제14조(연구개발비의 이월사용)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제11조(연구개발비 청구), 제12조(연구개발비 지급), 제13조(연구개발비 관리), 제14조(연구비카드 발급 및 운영), 제15조(연구개발비 사용), 제16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가. 연구개발비 관리 나. 연구개발비 사용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L1. 기업부담 연구비에 대한 비목제한 등 세부 규정사항(현물인정 비목)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 및 정산기준 제10조(기업참여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③ 기업부담 연구개발비중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제10조(기업참여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③ 기업부담 연구개발비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민간부담금 형태) ① 민간부담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등) ②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은 당해 연구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다음 각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 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L1. 기업부담 연구비에 대한 비목제한 등 세부 규정사항(현물인정 비목)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범위)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은 현물 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관계공무원 등의 증빙자료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인정)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인정)	비목(범위)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은 현물 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관계공무원 등의 증빙자료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인 경우 기업부설(연) 소속인력은 제외하며, 대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인정) 2. 직접경비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인정)	제외한 현금과 현물전액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 현물 투자의 50% 이내에서 인정하되, 인건비만으로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현물부담 기준의 50%까지 인정) 2.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임차료로서 구입대가의 10% 이내로 계상하며,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인정) 3.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비 및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일정비율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사업별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1. 연구인력 :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연구기자재 및 시설 :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감가상각 시킨 자산가 3. 시약 및 재료 등 :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 및 재료 등의 구입가 또는 판매가
L2. 대학 참여인력의 인건비 * 대학의 정부연구개발비 관리제도 개선방안(포항공과대학교, 2004)	*교육부(학술진흥재단) ·연구참여수당을 인건비로 지급한다. -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 학사과정, 학사과정, 석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생: 연 240만원 이내/1인당(월 20만원) ·석사과정생: 연 480만원 이내/1인당(월 40만원)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외부인건비 제한(박사과정학생 월 120만원 이내, 석사과정학생 월 80만원 이내)이 있으나, 연구기관이 출연연, 기업 등의 경우 외부인건비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이 계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연구수행기관이 지방(서울, 인천, 경기제외) 소재 대학의 경우는 기준액의 1.5배까지 계상집행할 수 있다.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이 모호하거나 대학의 학위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외부인건비의 직급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 *당해과제의 참여연구원이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의 합계 100% 초과 불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범위내에서 실소요금액을 반영함 - 대학의 경우 석·박사과정 학생 보수는 아래의 단가적용, 참여율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박사과정: 1,200,000원 × 0명 × 참여율 × 0월 (40% 참여시) ·석사과정: 800,000원 × 0명 × 참여율 × 0월 (40% 참여시)

구 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L2. 대학 참여인력의 인건비 * 대학의 정부연구개발비 관리제도 개선방안(포항공과대학교, 2004)	·박사과정생: 연 720만원 이내/1인당(월 60만원) - 박사급 연구원 수당 ·박사급 연구원: 연 960만원 이내/1인당(월 80만원)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경비를 받는 자 및 기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자는 제외			- 대학교수(정규직)의 참여율은 20% 초과할 수 없음(연구교수 제외) ·외부인력 활용기준 및 개별 월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인력활용기준, 계약이체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부로 증빙
L3. 간접비 항목별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사항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 및 정산기준 제9조(간접비) 간접비는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항에 따라 계상한다. ①간접경비 : 당해 연구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경비로서 <별표1>“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라 연구기관별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준비금 :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이윤적 개념으로 연구원들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인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경비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제9조(간접비) 간접비는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항에 따라 계상한다. ①간접경비 : 당해 연구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경비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원비율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준비금 : 연구원들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인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경비로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표6]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 나. 연구개발비 사용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되, 계상기준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간접비의 합계액은 증액하지 않고 세목별로 당해 연구기관의 내부결재 등을 거쳐 변동시 인정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연가 등에 대한 지급 등 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당해 과제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을 위한 집행시 인정	2004년도 연구개발비 산정기준(2004, 정보통신부) 4.1 간접경비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정부출연연구기관 :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제시한 간접경비 계상비율을 적용 ·기업체 :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7% 이하 계상 ·간접경비산출위원회 비적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타 기관 :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액의 15% 이하 계상 4.2 연구개발 준비금 연구개발에 대한 이윤적 개념으로 연구인력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퇴직금 등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15% 이하 계상 4.3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실소요금액을 계상

구 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L3. 간접비 항목 별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 사항	③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 권의 출원·등록에 직 접 필요한 제비용으로 서 연구계획서 상에 산업재산권·출원 등 록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며, 별도 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사용실적을 보고한다.	③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유지비 : 프로그 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된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에 직접 필 요한 제비용으로서 동 비 용을 사용·관리하기 위 한 연구기관 자체운영요 령이 구비되고 연구계획 서 상에 산업재산권·출 원 등록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국내 1건당 200만원 이내, 국외 1건 당 800만원 이내)하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 고 사용실적을 보고한다.		
L4.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의 프로그램 정의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산정·사용·관 리 및 정산기준 제9조 (간접비) ③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 업재산권의 출원·등 록에 직접 필요한 제 비용으로서 연구계획 서 상에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 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사용실적을 보고한다.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 정·사용 및 정산지침 제 9조(간접비) ③ 산업재산 권 출원·등록 및 유지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 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유지에 직 접 필요한 제비용으로서 동 비용을 사용·관리하기 위한 연구기관 자체운영요 령이 구비되고 연구계획서 상에 산업재산권·출원 등 록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 여 계상(국내 1건당 200만 원 이내, 국외 1건당 800 만원 이내)하며, 별도의 계 정으로 관리하고 사용실적 을 보고한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 관리지침 [별표6] 사용실 적보고서 검토사항 나. 연구개발비 사용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당해 과제에 대한 산업 재산권 출원·등록을 위 한 집행시 인정	2004년도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2004, 정보통신부) 4.3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 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 든 비용 ·실소요금액을 계상
L5. 연구개발비 관리 중 연구통 합계좌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산정·사용·관리 및 정산기준 제15조(연 구비카드제 운영) 2. 연 구과제별로 1과제 1통장 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다만, 특수성이 인정되 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 개발비 종합관리계좌의 개설을 허용한다.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 사용및정산지침 제13조(연구개발비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공동관리규정, 특연사처 리규정, 연구개발 과제협 약서, 기타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지침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 정 제29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 구기관(위탁기관 포함) 의 장은 제26조의 규정 에 의한 정부출연금 또 는 제27조의 규정에 의 한 민간부담금을 지급받 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 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와 참 여연구기관의 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 여 연구과제별로 별도의 계 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구 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L5. 연구개발비 관리 중 연구통 합계좌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비카드 결제계좌를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종합관리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L6. 비목별 기관/ 연구자 분리 관리 기준 (기관 공통 관리비목, 개별관리비목)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9조 (연구개발비의 사용)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연구개발비는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기관공통 관리비목과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관공통관리비목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관리비목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개발비중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발의사용하고, 개별관리비목은 연구책임자가 발의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L7. 연구개발비 사용 후 세부 증빙자료 및 보 존 기간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 및 정산기준 제11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8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②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 관리지침 나.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비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월별로 구분·편철하여 그 표지에 총진수, 총매수, 총금액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는 원본에 ‘환경기술개발사업 집행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⑤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비목별 사용내역서 및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하거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구 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L7. 연구개발비 사용 후 세부 증빙자료 및 보 존 기간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 의 규정에 의하되, 최 소한 당해과제 종료 년도후 5년간 보존하 여야 한다.	고무인(125mm×10mm <중고덕 10호> 혹은 100mm×20mm <중고 덕 16호>)을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 규정 제22조에 의한 협 약에서 정하여진 당 해연도 연구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M.(고시)간접경 비 계상기준	-	*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 경비 비율에 관한 기준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4-03)	-	-
N.(위)간접경비 산출 위원 회의 구성·운영	-	*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 경비 산출위원회 운영 세칙(과학기술부 훈령, 2002. 03. 08 제정)	-	-
O.(위)사용실적 보고 서식	1. 사업계획과 집행실 적과의 대비표 2. 공인회계사 의견서 3. 자체 회계감사 검증 보고서	1.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사 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 계감사 및 검증보고서 2.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3. 세부 비목별 내역서 4.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종합관리계좌 입금내 역서 5. 협동(위탁) 연구과제 정산결과 보고서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 서(전산출력물) 2. 비목별 집행내역서(전 산출력물) 3. 예금이자 발생내역 4. 회계감사보고서 5. 위탁기관의 연구개발 비 사용실적 회계감 사의견서(해당시) 6. 해당기관의 장 또는 총 (학)장의 확인서(해당시) 7. 공인회계사의 감사보 고서(해당시) 8. 기타 구비서류(해당시)	-
P.(시)집행잔액반 납의 예외사항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산장사용·관 리 및 정산기준 제22조 (집행잔액의 면제 및 감 면): 과오납금에 해당하 는 금액, 연구개발비 정 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집행잔액)이 1,000 원 미만인 경우, 연구수 행기관(참여기업)을 포함 한다)의 재정난, 천재지 변 및 기타 사유로 인하 여 집행잔액의 회수가 어려운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장 사용 및 정산지침 제20 조(집행잔액의 회수): 집 행잔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당해 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 고, 간접비의 경우는 집 행·관리 후 남은 잔액 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 용할 수 있으며 정산하 지 않는다.	-	-

구 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Q.(시)사용잔액 이월현황 보고 의무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산장사용관 리 및 정산기준 제14조 (연구개발비의 이월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 도별 발생한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연구비로 이월 (포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비카드종 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 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 서(별지 제2호)”를 전산 출력하여 연차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전 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비 이월사 용 승인을 받지 않고 집 행한 연구개발비는 정산 잔액으로 회수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 정·사용 및 정산지침 제20조 (집행잔액의 회 수): 다년도 협약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주관연 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 년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 으며, 과학기술부장관 또 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월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25조(연구개발비 잔액의 사용): 관리기관의 장은 다 년도 협약을 체결한 계속과 제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 을 얻어 사용잔액을 다음연 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R.(위)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산정·사용·관 리 및 정산기준 제20조(연구개발비 정 산 기준):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 한 금액, 비목별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 한 금액,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분 및 간 접비 당초계획 초과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을 받지 않은 이월사 용분, 당초 협약한 연 구개발비가 부적정하 게 과다책정된 금액, 당해과제와 무관한 연 구개발비 집행액, 증빙 서류 조작에 의한 허 위집행금액, 당해 협약 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한 연구개발비는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 정·사용 및 정산지침 제19조 (연구개발비 사 용실적에 대한 정산): 연 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 기간 종료 후 집행된 연 구개발비(다만, 계속과제 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 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 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점 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 접경비, 연구기간종료후 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비용은 예외), 연 구개발비중 산정기준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인정 기준에 의해 과학기술부 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 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확정 하여 통보한 금액, 연구 개발비 비목간 변경승인 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	-

구 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R.(위)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회수(예외: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간 중(종료일로부터 2주일 전) 원인행위를 하고 당해 협약기간내에 집 행한 연구재료 및 시설 비, 당해 협약기간내에 원인행위를 하여 협약 기간종료 후 집행한 최 종보고서 인쇄비 등)	아니하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연구비에 계상된 금액중 실지급되 지 않은 금액, 연구활동 비중 연구활동진흥비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 티브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과 당해 연구 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아 니한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및 세부과제관리비 를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세부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단, 인건비 잔액 발 생 비율에 따라 연동하여 회수하지 아니한다), 연 구기간중 발생한 이자로 서 연구개발에 연구과제 화하여 재투자하지 않았 거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용도 로 사용한 금액 및 당해 과제의 인건비, 간접비, 연구활동비에 사용한 금 액(다만, 연구개발채투자 의 경우 해당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	-
S.(고시)연구비 집 행관리절차의 적 절성, 연구비 관 리구축 정도, 연 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의 기준	-	-	-	-
T.(위)최종보고 서·요약서, 자 체평가 의견서	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 요령 [별지 제5호 서식]: 최종보고서 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 요령 [별지 제7호 서식]: 연구개발보고서 초록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 정 [별지 제6호 서식]: 최 종보고서 서식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 침 서식 7-2: 자체평가의 견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 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최종보고서 제출서(자체 평가 의견서, 보고서 초 록 서식포함)	-

구 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T.(위)최종보고 서·요약서, 자 체평가 의견서		* 자체평가의견서: 보안 성 검토(연구책임자, 연 구기관)	* 자체평가의견서: 연구 기관용과 참여기업용으 로 분리 작성(평가항목, 항목별 점수, 평가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U.(고시)연구개 발 과제요약서의 전산입력 방법	-	-	-	-
V.(시+ 위)연구개 발 평가등급 부 여기준 및 조치 방법	농림기술개발사업 관리 기준 제30조(최종평가 결과와 조치): 매우우 수, “우수”, “보통”, “불량”, “매우불량”과 제로 분류, 「최종보고 서」 등 관련서류를 소 정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원칙 적으로 최종평가 재평 가대상과제로 분류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 인센티브 또는 제재 조치 적용의 시점: 과 제조정관의 확정 일 ○ 인센티브 또는 제재 조치 적용 대상과제 의 범위: 신규과제 S등급과제 : 연구책임자 가 다른사업의 연구책임 자로 과제를 신청할 경 우 평가결과통보서의 조 치사항에 의거 가점부여 (평가후 2년간, 5점), B등 급과제 : 2인 이상의 전 문가 평가위원이 공통적 으로 지적인 부정적 의 견(Negative comment)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 여 후속 연구수행시 반 영토록 조치(불이익 없 음), C등급과제 : 연구책 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에 대 하여는 다음의 제재조치 를 적용하며, 제재대상, 제재유형, 제재기간은 전 문위원이 선택적으로 부 과(선정평가시 감점(평가 후 2년간, 3점), 평가위 원 참여자격 제한(1년, 2 년), 연구책임자로 참여 제한(6개월, 1년)), D등급 과제 : 연구책임자(세부 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 책임자)에 대하여는 다음 의 제재조치를 적용하며,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 정 제35조(최종평가): “성 공”, “실패”의 2등급으로 평가, “실패”로 확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정밀 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조치 * 최종평가결과에 대한 보 고시, 개발결과의 활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 업화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 이 경우 환경부장 관은 사업화를 위한 자 금지원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리지침 제16조(결과평가): 결과평가는 서면 또는 발표 평가를 원칙, 최종점수의 순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하 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 되,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 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절 대평가를 병행, 진도점검실 적을 결과평가시 반영

구 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V.(시+ 위)연구개발 평가등급 부여기준 및 조치 방법		제재대상, 제재유형, 제재기간은 전문위원이 선택적으로 부과(선정평가시 감점(평가후 2년간, 5점), 특정연구개발사업에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1년, 2년), 연구책임자로 참여제한(1년, 2년)) ※ 전문위원은 『C등급』 이하 과제중 과제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과제(당초 목적하지 않은 우수 연구성과물이 부수적으로 발생한 과제)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W.(시)연구개발 평가백서 발간원칙, 백서의 내용	-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Ⅶ. 평가백서 ·발간시기: 2~3년간의 평가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발간 ·평가백서의 내용: 평가계획, 평가대상 사업, 평가일정, 평가결과, 평가위원 현황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32조(연구개발결과에의 평가): 연구개발결과에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	-
X.(위)연구개발 결과의 배포대상 기관	국공립도서관(21개), 농업인 단체(31개), 전국 농과계 대학(46개), 국공립연구기관(27개)	23개 기관 + 연구책임자 지정(10개 기관)	-	-
Y.(위)최종보고서의 종합유통체계 구축	-	-	-	-
Z.(위)연구개발 정보의 포함사항	-	-	-	-

<표 3-2> 항목별·부처별 연구개발 행정규칙 내용 2: 건설, 산업, 보건

구 분	건설교통부: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산업자원부: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A.(시)연구개발단계의 구분	기초, 응용, 실용화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B.(시)국내외특허동향조사의 내용, 서식	-	-	-
C.(시)국과위신규사업 심의제출서식	-	-	-
D.(시)기술수요조사서 서식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제14조(연구과제의 발굴 등): 기술수요조사의 근거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12조(기술개발사업분야의 발굴), 제13조(기술수요조사사업의 실시): 기술수요조사의 근거 * 산업계 기술수요조사표(서식)	-
E.(고시)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	-	-
F.(위)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연구개발 과제의 핵심어(keyword) 작성 2. 참여연구원 현황정보 구체화(학위, 전공, 학교, 자격 등) 3. 연구개발 과제요약서 작성 4. 기술분류표 제시 5.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 검토(중복방지를 위한 조사 및 검토결과, 과제의 차별화 방안)	1. '계획서 작성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제신청자에게 있다'는 주의문 제시 2. 기술분야별 공고번호 기재 3. 인터넷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기재 4. 기술분류표 제시 5. 개발기술의 도출근거 작성(산업기술지도, 국가기술지도의 자료명, 페이지, 도출내용 등) 6. 참여연구원 현황정보 구체화(학위, 전공, 학교, 자격 등) 7. 여성 참여인력 현황표 작성	1. 기술분류표 제시 2. 우수연구자 가산점 신청서 작성 3. 계획서의 인터넷을 통한 제출(전산접수증) 4. 연구개발 장애요인 해결방법 작성 5. 계량적 예상 연구성과 작성
F'. * 기술분류체계	건설기술분류코드	산업기술분류표	보건의료기술분류표
G.(위)평가위원 선정활용 기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제3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전문위원회(10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 1차 평가 수행), 분과위원회(7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 2차평가, 중간 및 최종평가 수행), 총괄위원회(10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간 및 최종평가 결과의 총괄 심의조정 수행), 추적평가위원회(10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도를 추적하는 평가 수행) 제5조(평가위원의 위촉), 제6조(이해관계자의 배제)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6조(기술개발분야별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평가지침 제4조(평가방법): 평가위원회는 종합평가 시행,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서면평가, 구두평가, 현장평가를 동일위원으로 위촉, 전문위원회는 분야별·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자문등 기타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성·운영

구 분	건설교통부: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산업자원부: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G'. 평가위원 후보 단 구성운영 기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제4조(평가위원의 관리 및 운영)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4 조(기술개발기획평가단)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관리지 침: 기술기획평가단 위원 등록 및 선정, 자격, 자격 상실기준	-
H.(위)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제10조(선정평가 사전검토): 건설 교통부와 타 부처에서 시행한 연 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및 유사 성 여부 검토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 17조(기술개발사업자의 선정):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등이 같 지 않은 경우 동일한 과제의 경 쟁적 지원 개발인정	-
I.(위)연구개발과제 우대의 기준 및 방법	건설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 제8 조(가점 및 감점): 대기업이 주 관·중소기업이 주관·중소기업 참여 과제에 대한 가점,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16조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 의):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 업,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 시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총괄책 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참여연구 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 상,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 기타 산업자원부장 관이 정하는 경우 가점처리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가점 기준: 중소기업이 주관하 는 산학, 산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 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 관으로 신청한 과제, 참여연구 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 과제, 기 타 공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 하는 경우 가점부여(가점기준에 따라 가점 합산부여, 합산한 가 점은 10점 초과불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평가지침 제8조(가산점부여): 주관연구기관 이 벤처기업인 경우, 기초응용지 원 종료과제가 실용화연구지원 과 제로 연계되어 신청한 경우, 최근 3년간 최종평가결과 우수관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 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가점 (총점은 5점초과 불가)
J.(고시)연구개발 소외지역	-	-	-
K.(위)연차실적계획서	특이사항 없음	* 진도보고서로 같음(당해년도 추진실적, 기술개발 결과, 결론 및 향후계획, 사업비 사용현황)	1. 연구성과 활용 현황표 작성(인재 양성, 고용창출, 전시 전람회 참 가, 정책활용, 타연구 활용, 언론 홍보 및 대국민 교육 실적 등) 2. 연구과제 요약문(서) 작성

구 분	건설교통부: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산업자원부: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I0.(위)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기준	건설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연구개발비 산정, 사용, 협약, 정산 및 사후관리) 제21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제2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제23조(연구개발비의 사용)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급) 제25조(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의 예금이자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한다. 단, 정부출연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이자수입으로 인정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정산지침 제11조(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제12조(이자수입 등의 처리) 중앙전산관리체계에 따른 당해 연구개발비의 예금이자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과제 연구개발비(현물부담분 제외)의 0.1%를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중 발생한 이자로 간주한다. 제13조(연구개발비의 변경) 연구개발비중 인건비를 협약시의 연구개발사업계획서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제종료 2개월전까지 사전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I1. 기업부담 연구비에 대한 비목제한 등 세부 규정사항(현물인정 비목)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1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④제2항에 의하여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금액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전문기관의 장 등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이내에서 인정)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이내에서 인정)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20조(민간부담금) ①기술개발사업비중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기술개발사업비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에 제외한 현금과 현물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현물형태로 부담하여야 한다. 1.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식약 및 재료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정산지침 제10조(기업참여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③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범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관리하고 관계공무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50% 이내) 2. 직접비 중 보유하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I2. 대학 참여인력의 인건비 * 대학의 정부연구개발비 관리제도 개선방안(포항공과대학교, 2004)	-	-	·외부인건비: 해당 연구기관이나 타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로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

구 분	건설교통부: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산업자원부: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L2. 대학 참여인력의 인건비 * 대학의 정부연구개발비 관리제도 개선방안(포항공과대학교, 2004)			- BK21 참여연구원이 경우 기관의 외부인건비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보건복지부 주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율 30% 이하로 제한함 ·외부인건비 산출식 - 외부인건비 = 기관규정에 따른 월평균실지급액(혹은 아래의 월평균기준액) × 참여율 × 실제 연구참여기간(월) - 외부인건비 지급기준 박사학위 소지자에 준하는 자 1,800,000원 이하 석사학위 소지자에 준하는 자 1,200,000원 이하 기타 800,000원 이하
L3. 간접비 항목별 사용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사항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0조(간접비) 간접비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항에 따라 계상된다. ①간접경비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로 계상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간접경비산출위원회의 산출기준을 적용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 15%범위내에서 계상된다. ②연구개발준비금 : 연구개발수행에 대한 이윤적 개념으로 연구원들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기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내부인건비의 15%범위내에서 계상된다. ③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되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별표1 ·간접 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경비 ·기술개발 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15%이내)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비용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정산지침 제9조(간접비) 간접비는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계상한다. 1. 간접경비 : 당해 연구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경비 2. 연구개발준비금 : 연구개발수행에 대한 이윤적 개념으로 연구원들의 일시적 연구 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인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경비로서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으로 한정하되, 해당 세부과제 내부인건비(현물제외)의 15% 범위 안에서 계상 3.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직접 필요한 제비용으로서 연구계획서 상에 산업재산권·출원 등록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며, 사용실적보고서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함.

구 분	건설교통부: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산업자원부: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L4.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의 프로그램 정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0조(간접비) ③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비용으로서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되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별표1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비용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정산지침 제9조(간접비) 3.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직접 필요한 제비용으로서 연구계획서 상에 산업재산권·출원 등록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며, 사용실적보고서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함.
L5. 연구개발비 관리 중 연구통합계좌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2개 과제 이상의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25조(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개발비산정·사용·관리·정산지침 제11조(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또는 정부외의 자(민간부담금)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은 때에는 관리규정 제25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제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24조(출연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제1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 소속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중앙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L6. 비목별 기관/연구자 분리 관리 기준 (기관공통관리비목, 개별관리비목)	-	-	-
L7. 연구개발비 사용 후 세부 증빙자료 및 보존 기간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④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 집행시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당해 과제와 관련된 집행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 증빙서류 등을 최소한 당해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개발비산정·사용·관리·정산지침 제11조(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되,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구 분	건설교통부: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산업자원부: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M.(고시)간접경비 계상기준	-	-	-
N.(위)간접경비산출위원회의 구성·운영	-	-	-
O.(위)사용실적보고 서식	1.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3.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4. 현물 출자 확인서	1. 개발사업비 사용명세서(비목별 내역서 포함) 1부. 2. 현물출자확인서 3. 주관기관장의 확인서 4. 기타 제출자료 -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사업비 통장 사본 1부 - 협약서 상 ‘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간인) 및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사업비 관련 변경 통보 및 승인 득한 공문	1.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현황 1부. 2.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각1부 -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 현금출납부 -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내역서 - 현물부담 이행확인서(해당시)
P.(시)집행잔액반납의 예외사항	-	-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정산지침 제19조(정산잔액의 면제 및 감면): 연구개발비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연구수행기관(참여기업을 포함한다)의 재정사정, 천재지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산잔액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Q.(시)사용잔액 이월현황 보고의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연구개발비 산정, 사용, 협약, 정산 및 사후관리) 제31조(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의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당해 과제의 다음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월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25조(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협약기간이 2년이상(이하 “다년도 협약”이라 한다)인 과제의 연차별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잔액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R.(위)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연구개발비 산정, 사용, 협약, 정산 및 사후관리) 제30조(가정산): 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기간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28조(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달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개발비 산정·사용·관리·정산지침 제17조(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협약해약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기지급된 정부출연금, 이에 따른 민간부담금 및 발생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구 분	건설교통부: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산업자원부: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R.(위)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기간내에 연구개발비 집행 및 정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적서 또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가정산하여야 한다. 1. 차년도 계속사업으로 당해 협약기간내 발주된 물품 중 납품지연 등으로 연구기간내 정산이 어려운 경우 2. 연구보고서 인쇄비 및 배포에 소요되는 우편료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 ②가정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보전하지 아니하며, 가정산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정산대상으로 함,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관리기관장의 사용승인(변경승인포함)을 받지 않은 미승인분, 직접비중 연구활동비 당초계획 초과분 및 간접비 당초계획 초과분, 당초 협약한 연구개발비가 부적정하게 과다책정된 금액, 당해과제와 무관한 연구개발비 집행액, 증빙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집행금액, 당해 협약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한 연구개발비는 회수(최종보고서 인쇄비와 공인회계사 수수료는 정산잔액에서 제외)
S.(고시)연구비 집행 관리절차의 적절성, 연구비 관리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의 기준	-	-	-
T.(위)최종보고서·요약서, 자체평가 의견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연구개발 최종(중간) 보고서(자체평가 의견서 포함) * 자체평가의견서: 평가항목, 항목별 점수, 평가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산업기술개발사업 [일반 서식 제11호의 첨부1]: 산업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산업기술개발사업 [일반 서식 제11호의 첨부4]: 산업기술개발사업 보고서 요약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최종보고서 서식 1. 최종보고서 내용의 전산입력 의무화 2. 최종보고서 평가면제: 지원기간 동안 과제로 발생한 매출액이 정부출연연구비 이상인 경우 “우수(90점이상)”과제로 평가하고 최종보고서 평가를 면제해 줌, 상기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경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신규참여시 주관연구책임자에게 1회에 한해 가산점(2점)을 부여함, 지원기간 동안 매출액이 발생하여 최종보고서 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과제는 최종보고서내에 제품관련 매출액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제출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구 분	건설교통부: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산업자원부:산업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U.(고시)연구개발 과제요약서의 전산 입력 방법	-	-	-
V.(시+ 위)연구개발 평가등급 부여기준 및 조치방법	-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개정 제27조(기술개발사업결과의 평가): 기술개발 과제평가와 기술개발사업평가로 구분,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성공(우수, 보통)” 또는 “실패(성실실패, 불성실실패)”로 평가 * 기술개발사업평가: 기술개발사업의 목적,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이때 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사업 체제를 개편한다).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평가지침 제 16조(최종보고서 평가): 「최종보고서」 제출시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산업재산권출원(등록)증의 사본, 기타 연구결과물 등 연구성과물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전문학술지 게재 승인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증명서를 첨부), 실용화연구지원과제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에 과제로 발생한 매출액이 정부출연금 이상 발생한 경우 최종보고서 우수과제(90점이상)로 평가하고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음, 우수, 보통, 불량으로 구분
W.(시)연구개발 평가 백서 발간원칙, 백서의 내용	-	-	-
X.(위)연구개발결과 의 배포대상기관	110개 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8개), 국공립 도서관(3개), 연구조합 및 협회(11개: 선택)
Y.(위)최종보고서의 종합유통체계 구축	-	-	-
Z.(위)연구개발정보 의 포함사항	-	-	-

제 4 장 시행규칙 제정(안)

제 1 절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영”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제정골자

-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1조)
- (연구개발단계의 구분) 영에 의하여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초, 응용 및 개발단계로 구분하도록 함 (안 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기술수요조사 결과의 부처공동 활용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표준서식을 정함 (안 3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선정 등)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연구과제 평가위원 선정·활용 기준,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기준·방법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기준방법을 정함 (안 4조)
- (연구개발비의 지급) 기업참여시 현물부담 가능 비목, 대학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항목의 지급기준 등을 정함 (안 6조)
- (연구개발비의 관리)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비 비목별 관리기준, 연구개발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 및 보존기간을 정함 (안 7조)
- (간접경비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간접경비산출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 및 산학연 전문가로 하고, 연도별 대상기관의 간접경비를 산출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함 (안 8조)

-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서식, 연구기관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및 부당집행금액 회수기준을 정함 (안 9조)
-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 자체평가의견서 서식 및 동 서류의 제출기한을 정함 (안 10조)
-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배포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최종보고서 관리 방식을 정함 (안 1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부처별 과제관리시스템 운영시 필수 관리정보,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망과의 연계체계 구축 사항을 정함 (안 13조)
- (평가위원후보단의 구성·관리·효율적 사용) 과학기술부 장관은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을 위한 창구를 개설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함 (안 15조)
- (연구장비정보망의 연구장비 등록절차 및 활용방법 등)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정보망 활용 시 필수기재 사항을 정함 (안 16조)

제 2 절 조문별 제정이유

시행규칙 제정안(본문)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각 조문별 제정이유를 아래에 제시하며, 2005. 06. 01자로 제정확정 된 시행규칙의 원문과 향후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부록에서 제시한다.

<표 4-1> 조문별 내용·제정이유³⁾

시행규칙 제정안	조문별 제정이유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단계의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는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단계구분 - OECD "Frascati Manual"제시 기준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시 연구개발사업 단계구분 방법

3) 과학기술부(200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조문별 설명자료

시행규칙 제정안	조문별 제정이유																																																
1. “기초연구단계”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2. “응용연구단계” :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창적인 연구 3. “개발연구단계” :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제3조(기술수요조사의 표준서식) 영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술수요 조사의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선정 등) ①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서식을 적용함에 있어, 서식의 항목 중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계획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 선정·활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영 제5조제3항의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기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협약의 체결 등)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서식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연차실적 및 계획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분야 및 연구개발단계가 상호 중복됨에 따라, - 기술수요 조사결과와 범부처 공동활용 필요 - 이를 위한 정보공유를 위해 서식의 표준화가 필요함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통일 - 부처별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대부분 유사함에도 상이 서식으로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행정과다 <table><tr><th>과기부</th><th>산자부</th><th>정통부</th><th>복지부</th></tr><tr><td>연구필요성</td><td>개발기술 개요</td><td>중요성 및 문제점</td><td>요약문</td></tr><tr><td>연구목표 및 내용</td><td>시장현황 /사업화전망</td><td>현황 및 접근방법</td><td>당해연도 연구개발비</td></tr><tr><td>평가착안점 및 척도</td><td>기술개발 목표/내용</td><td>연구목표 및 수행계획</td><td>참여기업</td></tr><tr><td>추진전략 및 방법</td><td>위탁기술 목표/내용</td><td>추진일정</td><td>연구기관 현황</td></tr><tr><td>연구개발 추진체계</td><td>추진전략 및 체계</td><td>활용방안</td><td>연구필요성</td></tr><tr><td>국제공동 추진계획</td><td>추진일정</td><td>위탁과제 및 외부용역</td><td>연구목표 및 범위</td></tr><tr><td>기대성과</td><td>실적 및 연구원</td><td>참여인력 및 연구기관 현황</td><td>연구내용 및 방법</td></tr><tr><td>활용방안</td><td>총사업비</td><td>연구개발비</td><td>추진체계 및 일정</td></tr><tr><td>연구원</td><td>참여기업 부담내역</td><td></td><td>기대효과 및 활용방안</td></tr><tr><td>참여기업현황</td><td>참여기업 현황</td><td></td><td>기대성과</td></tr><tr><td>연구비</td><td></td><td></td><td>연구원</td></tr></table>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연구필요성	개발기술 개요	중요성 및 문제점	요약문	연구목표 및 내용	시장현황 /사업화전망	현황 및 접근방법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평가착안점 및 척도	기술개발 목표/내용	연구목표 및 수행계획	참여기업	추진전략 및 방법	위탁기술 목표/내용	추진일정	연구기관 현황	연구개발 추진체계	추진전략 및 체계	활용방안	연구필요성	국제공동 추진계획	추진일정	위탁과제 및 외부용역	연구목표 및 범위	기대성과	실적 및 연구원	참여인력 및 연구기관 현황	연구내용 및 방법	활용방안	총사업비	연구개발비	추진체계 및 일정	연구원	참여기업 부담내역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참여기업현황	참여기업 현황		기대성과	연구비			연구원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연구필요성	개발기술 개요	중요성 및 문제점	요약문																																														
연구목표 및 내용	시장현황 /사업화전망	현황 및 접근방법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평가착안점 및 척도	기술개발 목표/내용	연구목표 및 수행계획	참여기업																																														
추진전략 및 방법	위탁기술 목표/내용	추진일정	연구기관 현황																																														
연구개발 추진체계	추진전략 및 체계	활용방안	연구필요성																																														
국제공동 추진계획	추진일정	위탁과제 및 외부용역	연구목표 및 범위																																														
기대성과	실적 및 연구원	참여인력 및 연구기관 현황	연구내용 및 방법																																														
활용방안	총사업비	연구개발비	추진체계 및 일정																																														
연구원	참여기업 부담내역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참여기업현황	참여기업 현황		기대성과																																														
연구비			연구원																																														

시행규칙 제정안	조문별 제정이유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영 별표 1에 따라 참여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비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하며 참여기업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유지해야 한다.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②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이 기초연구단계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소속연구원의 내부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다. ③영 별표 2의 외부인건비 중 대학이 연구수행기관인 경우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월 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계상하고, 참여율은 정규수업의 수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800,000원 2. 석사과정 : 1,500,000원 3. 박사과정 : 2,000,000원 ④영 별표 2의 직접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이라 함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기·비품을 말한다. ⑤영 별표 2의 간접비 계상기준인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중 “프로그램”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제7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영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 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시, -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평가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원칙적 참여 배제자 범위 명확화 <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과기부</th><th>산자부</th><th>정통부</th><th>건교부</th></tr></thead><tbody><tr><td>고려 사항</td><td>산 · 학 · 연 균형, 지방, 여성 이해관계자 배제</td><td>산 · 학 · 연 균형, 이해관계자 배제</td><td>이해관계자 배제</td><td>산 · 학 · 연 균형 이해관계자 배제</td></tr><tr><td>공무원</td><td>불참</td><td>참여/채점</td><td>배제</td><td>참여/채점</td></tr><tr><td>전문 기관</td><td>간사위원으로 참여 - 채점권한 없음</td><td>간사로 참여 - 채점권한 없음</td><td>전문기관 참여하지 않음</td><td>간사로 참여 - 채점권한 없음</td></tr></tbody></table> ○ 범부처연구개발사업 과제현황 파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 정보망」(www.kordi.go.kr)) 을 이용한 연구과제 중복검토 절차 및 기준제시 - 19개 부처에서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사전검색을 통해 중복지원 방지 ○ 과제선정 시 가점·감점부여의 기준을 표준화·명확화하여 부처간 공유가 가능토록 함 ○ 표준화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의 표준화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시 과제단위로 제출하는 성과, 과제요약서의 서식과 통일하여 연구자 편의 증대 ○ 기업참여 시 영에서 규정된 연구비 중 ‘현물부담’의 구체적 기준 명확화 ○ 영 제10조제1항 단서조항인 ‘별표1의 기준과 달리’의 의미 명확화	구 분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고려 사항	산 · 학 · 연 균형, 지방, 여성 이해관계자 배제	산 · 학 · 연 균형, 이해관계자 배제	이해관계자 배제	산 · 학 · 연 균형 이해관계자 배제	공무원	불참	참여/채점	배제	참여/채점	전문 기관	간사위원으로 참여 - 채점권한 없음	간사로 참여 - 채점권한 없음	전문기관 참여하지 않음	간사로 참여 - 채점권한 없음
구 분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고려 사항	산 · 학 · 연 균형, 지방, 여성 이해관계자 배제	산 · 학 · 연 균형, 이해관계자 배제	이해관계자 배제	산 · 학 · 연 균형 이해관계자 배제																	
공무원	불참	참여/채점	배제	참여/채점																	
전문 기관	간사위원으로 참여 - 채점권한 없음	간사로 참여 - 채점권한 없음	전문기관 참여하지 않음	간사로 참여 - 채점권한 없음																	

시행규칙 제정안	조문별 제정이유
2.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 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②영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비목 중 인건비와 간접비는 주관연구기관장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며, 직접비와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고 이때에는 기관별 규정과 절차를 따른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영별표 2에 의한 간접비 중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사용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하며, 연구비가 사용용도대로 사용된 경우에는 잔액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와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의한 증빙서류는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해 보존하고, 최소한 당해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경비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영 제10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산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이 되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이 된다.	○대학생의 연구참여에 따른 인건비 기준통일 필요성 지적 (감사원) ○ 학생 인건비의 현실화 필요성 지적 (청와대 정보과기 보좌관실) - 학사 : 등록금 및 월20만원 생활비 보조 - 석사 : 등록금 및 월70만원 생활비 보조 - 박사 : 등록금 및 월120만원 생활비 보조 [현행 각 부 규정비교] 과기부, 정통부 : × , 80, 120 산자부 : 80, 150, 200 농림부 : 20, 40, 60 복지부 : 80(기타), 120(석사소지), 180(박사소지)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대통령 상의 사용기준 중 “프로그램”의 의미 명확화 [현행 각부 규정비교] 농림·환경·건교·복지 : ‘당해 과제’ 과기·정통·산자 : ‘당해 프로그램’ ○ 과제별 개별 통장관리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계좌 인정 근거마련 ○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역할분담 명확화 ※ 연구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대학의 경우 교수가 연구비를 개별관리함에 따라 연구비 유용 등 문제소지 발생 (과기, 환경만 비목관리기준 규정있음) ○ 사용용도가 명확히 지정된 간접비의 사용 절차에 대한 명확화 - 부처별, 연구기관별 해석차이로 동 비목의 이월금지, 이월한도 각기 운영 등의 문제발생 ○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산출위원회 운영세칙」(과기부 훈령 제180호) 준용

시행규칙 제정안	조문별 제정이유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국방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중소기업청·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위촉직 위원 :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은 간접경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최종 확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대학분야 소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이하 “사용실적 보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1조제1항 제2호의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서식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대통령령 별표2에 따른 연구개발비목별 당초계획/변동내역/사용금액/증감 및 사유 기재서식 표준화 ○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서식 통일 - 연구기관장 명의의 연구과제별 정보 및 회계감사 여부 확인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및 부당집행 금액 회수방법 및 예외 금액 표준화

시행규칙 제정안	조문별 제정이유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때에는 종합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한다. 다만, 사용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0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서식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연구개발 결과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제1항의 서류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종류 후 1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따른 조치)①영 제14조제3항의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1. 별표3에 의한 최종평가가 “최우수 등급”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경우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해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 제고에 현저한 기여가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 규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처별로 부당집행 금액의 기준, 회수의 방법 및 기준 등 연구비 정산에 관한 기준이 상이하여 연구비 관리에 혼란 → 연구기관은 통일된 정산지침 요구 ○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 연구개발 결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DB구축 및 정보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식통일 필요 - 연구개발과제 요약서는 조사·분석·평가 시 제출하는 양식과 동일하여 별도작성의 불편 제거 ※ 부처별 최종보고서 제출서류 ▪농림부 : 최종보고서, 보고서 초록 ▪과기·정통·환경 : 최종보고서, 자체평가의견서 ▪산자부 : 최종보고서, 보고서 요약 ▪복지부 : 최종보고서 (전산입력) ○ 우수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범부처 활용 및 후속사업 지원을 위해 우수과제의 기준 및 후속지원 범위 등의 표준화 필요 (영 제20조 : 범부처 참여제한 근거와 비교) [부처별 평가등급] ▪농림 : 매우우수 ~ 매우불량 5단계 ▪과기 : S ~ D 5단계 ▪환경 : 성공 또는 실패 2단계 ▪정통부 : 상대평가 원칙 ▪산자 : 성공(우수,보통), 실패(성실실패, 불성실실패) ▪복지 : 우수, 보통, 불량

시행규칙 제정안	조문별 제정이유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코자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2. 동일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12조(연구개발결과물의 공개)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납본된 형태의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별표 5의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통합제공을 위해, 제9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과제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①영 제1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과제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4조제4항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 영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 영 제12조제1항에 의한 최종보고서·요약서 2. 과제별 선정·단계·최종·추적 평가시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별 소속기관, 주민등록번호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적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과제관리시스템을 영 제16조의2 제2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 연구개발결과물의 필수 배포기관 지정 -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 현재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번호가 표준화되지 않아 상호간 과제정보 교류 및 특허성과 등의 통합 분석 불가능 - 부처/사업/최초협약연도/기술분야/연구개발 단계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범 부처간 활용할 수 있는 identity부여 필요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04.7 국과위 보고) - 연구개발성과, 인력, 기자재, 과제정보(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 정보망) 등이 통합 연계된 시스템 - ‘05~’08년간 구축예정 ○ 연구개발 과제정보의 공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필수 정보항목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정보망」(‘01~, www.kordi.go.kr) - 조사·분석·평가 및 연구과제 정보제공을 위해 운영 중

시행규칙 제정안	조문별 제정이유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 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 정보관리계획 등)영 제1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정보 관리계획 2. 평가위원정보 관리 계획 3. 연구개발 결과평가 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5. 기타 연구개발 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평가위원후보단의 구성·관리·효율적 사용)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6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상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6조의2 제4항에 의한 평가위원후보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6조의2 제4항에 의한 평가위원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장비정보망의 연구장비 등록절차 및 활용방법 등) 영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장비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운영하는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 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장비의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 다수부처에서 수행중인 연구개발 사업관련 정보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범부처 의사결정기구 활용필요 ○ 연구개발 정보관리계획 수립의 범위 명확화 ○부처별 평가위원 후보단 운영·현황 <table><tr><th>구분</th><th>과기부</th><th>산자부</th><th>정통부</th><th>환경부</th></tr><tr><td>위원 Pool</td><td>약10,000여명</td><td>8,000여명</td><td>3,000여명</td><td>3,000여명</td></tr><tr><td>자격</td><td>5년이상 연구경력자 (박사소지 원칙)</td><td>15년이상 이사급 부교수 책임급</td><td>15년이상 경력자 전임강사 선임급 5급 이상 공무원</td><td>7년 이상 경력자 기술사 전임강사 박사 또는 선임급</td></tr><tr><td>선정 방법</td><td>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함</td><td>관련기술 분야 전문가 선정</td><td>관련기술 분야의 기술 코드를 갖는 전문가 선정</td><td>학연, 소속 기관 등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전문가로 1차 3배수 선정</td></tr></table>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Pool확대를 위해 부처간 평가위원 관련 정보 공유필요 ○ 연구장비정보망(www.keol.kbsi.re.kr)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운영중인 연구장비 정보망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필수 입력 사항 나열	구분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위원 Pool	약10,000여명	8,000여명	3,000여명	3,000여명	자격	5년이상 연구경력자 (박사소지 원칙)	15년이상 이사급 부교수 책임급	15년이상 경력자 전임강사 선임급 5급 이상 공무원	7년 이상 경력자 기술사 전임강사 박사 또는 선임급	선정 방법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함	관련기술 분야 전문가 선정	관련기술 분야의 기술 코드를 갖는 전문가 선정	학연, 소속 기관 등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전문가로 1차 3배수 선정
구분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위원 Pool	약10,000여명	8,000여명	3,000여명	3,000여명																	
자격	5년이상 연구경력자 (박사소지 원칙)	15년이상 이사급 부교수 책임급	15년이상 경력자 전임강사 선임급 5급 이상 공무원	7년 이상 경력자 기술사 전임강사 박사 또는 선임급																	
선정 방법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함	관련기술 분야 전문가 선정	관련기술 분야의 기술 코드를 갖는 전문가 선정	학연, 소속 기관 등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전문가로 1차 3배수 선정																	

시행규칙 제정안	조문별 제정이유
4.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 예 및 활용계획 5. 연구장비의 구입가격, 이용절차, 이용료 등 제17조(보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서 정한 사항 외의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 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 조제2항 및 제15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 5 장 결 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였다.

시행규칙안은 시행규칙 제정범위 결정, 입법수요 분석, 부처별 행정규칙 비교 등을 통하여 마련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마련된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5. 06. 01자로 제정이 되었다.

시행규칙의 제정은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용하던 연구개발 행정 절차, 기준, 서식 등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표준화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제는 연구개발 행정부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연구개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부 록

- 부록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조문별 개정사유 / 75
- 부록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전문) / 100
- 부록 3. 고시(지정) 사항 /170

부록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조문별 개정사유¹⁾

현행	개정	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_____ _____ _____ _____법률 제2조제1호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_____.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는 것임 - 이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의 경우 기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기본사업은 출연연구기관이 고유 임무에 부합하도록 기관에서 연구방향 및 관리방법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부분임에도 본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 수요에 따라 수주하는 과제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관리·평가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신 설>	9.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각 부처 연구사업 및 연구과제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정보를 연구자 및 국민이 이용하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하여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이며, - 동 규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관련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명확화 하고, 기존시스템임을 설명하기 위해 상세히 서술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② <신 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수행 시 응용 및 개발단계의 연구	○ 「연구개발제도 개선 추진방안」(’03.12.11 제15회 국과위 운영위 확정)에서 연구기획의 체계화를 위해 응용 및 개발단계 연구사업 기획 시 특히

1) 과학기술부(200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부처협의 참고자료

현행	개정	사유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② <신설>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2년 이내의 단기사업, 기초단계의 연구개발사업과 특허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는 예외로 한다.	정보 활용을 확대하기로 함 - 이를 위해 기술동향조사 및 선행기술조사의 일환으로 연구사업의 기획시 특허정보 검색을 활성화 ○ 「특허로 본 국가연구개발 현황 및 효율화 방안」(’03.12.18, 제14회 국과위 확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과제선정시 특허정보 활용을 단계적으로 제도화 ○ 개개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선행특허조사를 의무화하기에는 기술범위, 기간 등의 모호함과 비용(1건당 400~1000만원)의 문제가 있으므로, - 일단 특허동향 조사 실시를 의무화함 ○ 다만, 중소기업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공정개선 등이 목적이므로 특허정보와 연관성 미약하고, - 기초연구의 경우 명확한 지적재산권, 시제품이 발생하지 않고, 보건의료 연구는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를 등록 할 수 없는 등의 사유를 예외로 인정 ※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현행	개정	사유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② <신 설>		※ 연구단계의 정의 (OECD 기준) 기초연구 : 특수한 응용 또는 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최초로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응용연구 :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창적인 연구 개발연구 : 기초·응용 및 실제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⑦ <신 설>	⑦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부처간 공동기획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동기획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공동기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사업이 다수부처의 업무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의 수월성 등을 이유로, 부처별로 산발수행 중이며, - 현재 추진되는 공동연구개발사업도 부처별로 각기 기획한 후 통합, 조정하여 비효율성 발생 ○ 「연구개발제도 개선 추진방안」에서 부처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은 국과위를 통해 지정되고, 예산편성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공동기획 확산유도 결정
제3조의 2 <신 설>	제3조의 2(사전기획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00억원 이상의 신규연구사업을 기획하는 경우 예산부처와 협의하여 예산편성이전에 구체화된 기획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장이	○ 체계적 연구기획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분한 기획기간을 의무화하기 위해, 중장기 대형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이전에 세밀한 기술기획 진행 필요 - 『선기획-후예산 시스템』 도입

현행	개정	사유
제3조의 2 <신설>	정하는 소규모의 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직접 연구기획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연구기획기간 : 현 2~4개월 → 6~7개월 ○ 특히, 사업비가 확보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하는 경우, 기획결과 중 상당부분이 사장될 수 있어 예산낭비 등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담당자의 소극적 행정 방지
<신설>	제3조의3(기술수요조사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상향식 연구기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국가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 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시 기술계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기획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례적인 절차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미 실시 - 정확한 기술수요를 바탕한 연구사업 기획을 위해 기술수요조사 실시 의무화 - 다만, 정책적 사항이나 국가전략과 관련된 기밀사안들은 예외인정
<신설>	② 제1항에 의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술수요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기술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기술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4. 기술개발 기간 및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7.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영역이 공유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전체적 기술수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 필요 ○ 기술수요 조사 시 필수파악사항 규정

현행	개정	사유
제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 ① _____ _____ 30일 이상 _____ _____.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_____. 1.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2.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사업 3.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사업	○ 현재 연구개발사업 추진 사업기획내용이 비공개되고 신규사업공고기간이 단기간으로 기획 미참여 연구자가 연구제안서를 충실히 작성하기 어렵고, 연구책임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 - 사업기획 참여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과제 배분 (감사원 지적, '03년) - 현재 신규사업 공고 후 접수마감일까지 기간을 대개 20일 내외 ⇒ 신규사업 공고기간을 최소 30일로 의무화 ○ 사업기획 사항 공고에서 면제되는 사안을 예시를 통해 명확화
<신 설>	③중앙행정기관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고시 자체 공고시스템 이외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사업 공고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신규사업 공고도 많은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이루어짐 - 국가연구개발사업 20개 부처 추진, 신규사업공고는 60여개 홈페이지 이용 ○ 연구자 개개인이 신규사업 공고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60여개 홈페이지를 매일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 ○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 포털사이트 (www.rndall.go.kr)」를 구축하여 운영 중 - 현재는 과학기술부가 각 부처 신규사업 공고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현행	개정	사유
<신설>		- 이에따라 일부 사업이 누락될 가능성 상존 ○ 각 부처 홈페이지와 동시에 상기 인터넷사이트에도 신규사업 공고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자의 편의 제고 -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홈페이지 이용의 실효성 확보
④<신설>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갈음하여 당해연도의 실적과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로 신청에 갈음할 수 있다.	○ 연구개발신청서와 연구개발계획서를 일원화 - 동 규정은 신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통령령 제6조의 규정의 위치를 변경한 것
<신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기존 대통령령 제6조
<신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업 공고시스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연차실적계획서 포함) 서식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R&D추진부처별로 공동관리 규정 이외에 연구관리관련 지침을 운영함에 따라, 각종 제출양식이 다양하여, 과중한 행정행위 초래

현행	개정	사유
<신설>		○ 연구사업 통합공고 홈페이지 정의 및 각부처가 게재해야 할 정보에 대한 사항, 각 부처가 연구개발계획서에 담아야 할 최소한의 사항에 대한 표준양식을 정함 - 이는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담길 연구사업 관련 정보들을 정하고, 최소한의 표준화를 통해 관리효율화 - 다만, 표준화되는 부분은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최소화할 예정임
제5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에서 배제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설신설>	제5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②-----제16조의2제4항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후보단을 이용하여 세부기술별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기관소속 직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제평가와 관련한 평가회의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탈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관부처 공무원 및 전문관리기관 직원의 평가참여는, -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저해 - 다만,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적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당해 공무원이 전문가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예외 인정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최근 3년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④-----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 소재 연구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혁신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서울, 경기 및 대전지역에 집중된 연구개발비 집중투자 해소 차원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다만,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평가의 투명성과 평가결과의 효과적 과제환류를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선정평가결과 통보해야 하는 정보를 명확히 규정 - 다만, 평가위원 개인별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은 평가자의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

현행	개정	사유
<신설>	⑦제2항 내지 제4항의 평가의 공정성, 중복성 및 연구개발과제 우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활용방법, 과제의 중복성 검토, 우수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은 시행규칙을 통해 제정
제6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생략)	<삭제>	○ 동일내용을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에 규정
제7조 (협약의 체결) ①<신설>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수록된 전자문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 대통령령 제6조에 제출자료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전자문서 추가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전자문서를 동시에 받음으로써, 국가연구개발종합관리 시스템에 이중입력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
① (생략)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전산관리용) 3.~11. (생략) ②~③ (생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3.~11.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내지 제3항과 같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관리를 위한 전자문서를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므로, 생략
<신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과제의 최초 협약년도 및 사업구분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의 과제별 고유번호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과제코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현재 각 부처는 국가적 차원의 통일없이 각기 연구개발과제 관리 코드를 부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제관리기관간 국가연구개발정보의 공유, 국가적 차원의 R&D현황과 악 등을 불가능하게 하고, - 출연(연), 대학, 기업에서는 다른 부처의 연구과제를 수주받는 경우 과제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에 애로사항 발생

현행	개정	사유
<신설>		○ 또한, 특허출원시 국가R&D 성과물임을 확인하여, 성과추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과제코드를 부여하는 것 필요 - 기술-연구자-특허-제품정보가 상호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R&D 성과관리의 신뢰성 확보 및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의사결정에 활용
제8조(협약의 변경) ①(생략)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제8조(협약의 변경) ①(현행과 같음) 1.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3.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협약을 변경하는 사유 중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중대사유를 예시로 규정 ○ 협약변경사유를 구체화한 이유는 상기와 같이 중요한 사유인 경우에는 정부부처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변경토록 하고, -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자유롭게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현행	개정	사유
제1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중앙행정기관의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출연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_____. _____. 다만 기초단계의 연구개발과제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도 연구개발비 전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초단계의 연구개발사업(과제)는 기업이 직접 활용할 결과가 많지 않아 기업이 참여를 기피함에도 참여부담금까지 납부케하여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 초래 ○ 기초단계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과제)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 다만, 이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에 부여하는 실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2와 같다.<단서 신설>	③_____. _____. 다만 국외연구기관 이 주관연구기관으로 특수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인 경우, 국내 규정만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특수성 예외인정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비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_____. _____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중앙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기관의 _____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비영리 법인 (예) - 과학기술부 장관이 설립을 승인한 각종 연구조합(나노, 기계 등) - 고등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목암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 간접경비란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지원 경비, 운영 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 등으로, - 현재, 출연(연) 이외는 인건비와 직접비 15% 내로, 각 부처별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계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학 및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적으로 통일된 간접경비 효율의 산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계의 요구에 따라, - 출연(연)의 경우와 같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간접경비 효율의 산정이 필요 ○ 간접경비산출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 산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정의

현행	개정	사유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간접경비산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운영세칙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⑤————— —————,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현재 간접경비산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제정·운영 ※ 정부출연연구기관간접경비산출위원회운영세칙 - 본 시행령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성질로 확대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정하고자 함
⑦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⑦—————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시 —————.	○ 연구자 편의성의 제고를 위해,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명확화
<신설>	⑨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화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현재 규정상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 사용방법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당해과제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마련
<신설>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연구개발비목, 서식 등 표준화가 가능한 사항 부문은 사요자 편의를 위해 시행규칙에서 정의
제11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생략) 1. (생략)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또는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	○ “공인회계사의견서”를 생략한 이유 - 실효성 : 현재까지 운영 결과 주관연구기관에서 발주한 회계감사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음 - 비용 : 연구비 1억 당 50만원으로 부담 큼

현행	개정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전문기관은 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_____ _____ _____.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주관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할 수 있다.	○ 향후, “연구관리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산 면제 실시 예정 - 주관연구기관 자체 연구비 관리시스템 체질강화 유도 ※ 『연구관리인증제도』 붙임 참고
<신 설>	⑤제1항 각호의 서식과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주관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연구비관련 각종 서식, 절차를 통일하여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방지하고자, - 연구비 사용잔액 처리, 부당 집행 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제12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_____ _____ 최종보고서, 초록, _____, 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_____ _____. -----.	○ 제출자료 중 ‘초록’(연구결과 보고서의 요약본)을 포함한 이유는 타 연구자의 정보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 보안상 개발결과 전체를 공개하지 못할 경우 등 다양한 사용에 대비 ○ 제출자료 중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 이를 이용한 관련자료의 DB화, 연구자들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중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_____ _____ _____ 다음 각호에-----. 1.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직결되는 연구개발결과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 중 별도의 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를 사례를 통해 제시 - 보안에 대한 예시를 함으로서 각 행정부처별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여 규정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현행	개정	사유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중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결과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보고서 및 초록,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의 서식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식중에서 가능한 부분은 통일함으로써, - 자료공유 및 활용촉진, 연구자 편의제고 등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생략)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현행과 같음) ②_____ _____ _____ _____. 다만 다년도 협약으로 연구기간이 단계로 협약된 과제의 경우 단계중의 중간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 종료시점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 협약된 연구수행 기간 중에 실시되는 중간평가의 생략을 규정화 - 보통 1년 단위 협약에 따라 연중 또는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R&D특성 상 단기간에 성과가 창출되기 어려워 중간평가의 실효성에 많은 이의제기 (일반적으로 연구개발과제는 3~10년의 기간소요) - 또한 평가준비로 인한 연구외적 부담으로 실질적 연구기간 단축 ○ 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체계화를 통해 보완 ※ 개정안 :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_____ 있어서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_____.	○ 선정평가위원과 결과평가위원 동일체 원칙 - 선정평가시와 결과평가시 평가위원이 다를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가 유지되기 힘들고, 평가위원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현행	개정	사유
제1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⑤(생략) <신설>	제1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⑤(현행과 같음) ⑥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속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항의 규정이 있음에도, 그 간 평가결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함 - 평가에 의한 상·벌이 공존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시행규칙에서 우수 과제 기준, 인센티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기존규정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
<신설>	제14조의 2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최종보고서, 초록 또는 그 전자문서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정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 각 부처별 연구사업에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구결과 공개는 일반적인 사안 - 이에 대한 연계강화가 및 부처별 서식의 통일강화가 절실한 사안
<신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초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 정보와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를 활용·확산하여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
<신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최종보고서의 종합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 정보가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처별 연구개발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의 R&D투입/산출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 과학기술부는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정보의 분산·통합형 시스템 구축

현	행	개	정	사	유
<신 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성과의 대국민 홍보 및 과학기술 문화확산 필요 - 연구성과의 이전, 확산을 위한 전제조건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수요자 접근의 용이성	
<신 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를 배포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국가보안, 영업비밀 등 사안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규정상에 명시	
<신 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적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신 설>		⑥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결과의 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연구개발과제 보고서 등 성과 종합관리를 위한 국가적 성과분류, DB화를 위한 표준 서식, 배포 기관 등은 시행규칙에 명시	
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생략) ②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①(현행과 같음) ②지적재산권----- ----- ----- -----		※ 산업재산권 vs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은 다음 3가지를 포함함 ▪X ▪저작권 (저작권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현행	개정	사유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지적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집적회로 배치, 영업비밀) - 산업재산권은 연구개발의 가능한 무형적 결과물 모두를 포함할 수 없으므로 포괄적 의미의 지적재산권으로 개정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u>주관연구기관이</u>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u>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u>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_____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 등이어서, _____불구하고 연구개발에 _____.	○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출연하여 개발된 기술의 주관연구기관이 국외기관이거나, 해외 매각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적 차원의 손실발생 ※ 대통령 지시사항 ('04.00.00, 국무회의 시) - 과학기술부에서 범부처 차원의 기술유출보호대책 세울 것 ○ 본 항 상단부에 연구개발결과 소유의 예외조건 3가지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는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
<신 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로서 지적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국내에 출원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출원서에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고유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특허로본 국가연구개발 성과와 효율화 방안」('03.12.18 국과위 상정, 특허청)에 의하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출원이라고 신고된 8,104건 중 - 하나의 특허출원을 두개 이상의 연구개발 과제 성과물로 신고한 사례가 652건 - 316건(3.9%)은 출원번호記載不備 등으로 출원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 ⇒ 특허 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입필요

현행	개정	사유
	2. 해외에 출원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서 및 출원번호통지서의 사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해외에서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과제의 객관적 성과평가를 위해 응용, 개발단계에서 특허등록은 주요 지표 - 연간 2만여 과제의 특허성과 정보파악을 위해서 DB화 및 과제코드 표준화, 특허 등록 시 과제정보 기입 등 필수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산업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_____ _____지적재산권_____ _____.	○ 제15조에서 개정
<신 설>	제16조의 2 (연구개발정보의 관리)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제반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국무총리 지시사항(1995-18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정보의 유통·활용을 위한 지원정보의 수집·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납본 대상의 40% 수준만 수집 - 1998년 이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의해 수집·유통
<신 설>	②과학기술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상호연계가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 과학기술부는 국가적 차원의 R&D관리 및 수요자에게의 정보제공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현행	개정	사유
<신 설>	③과학기술부 장관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담길 정보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이므로 상호 협조가 필수
<신 설>	④과학기술부 장관은 과제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위원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후보단을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위원후보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 R&D 추진부처별로 평가위원 Pool을 별도 운영함에 따라 동일인이 각 부처별 평가인력 DB자료에 중복입력 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또한,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후보대상자가 풍부하지 못한 현실에서 피평가자와 이해관계 당사자를 제외하면 해당 기술분야에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의 확보에 어려움 발생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기타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 각 부처별 평가위원 DB입력 사항을 표준화 시키고, 상호 연계되도록하여 상기 문제해결 도모
<신 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도입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국가가 출연한 연구개발기자재의 공동활용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 연구장비보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현재 연구장비정보망을 운영 중

현행	개정	사유
<신설>		※ 제8조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신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표준서식, 필수 정보, 관련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정의
제1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①~④(생략) ⑤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①~④(현행과 같음) ⑤_____지적재산권_____ _____지적재산권_____.	○ 제15조에서 개정
<신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활용 가능한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이전 전담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기술이전, 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확산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한국기술거래소 및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가능한 기술을 이에 연계하도록 촉진

현행	개정	사유
제18조(기술료의 징수)①주관 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기술료의 징수)①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영리법인인 주관연구기관이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기업 등 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에 의해 기술개발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실시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을 등록하지 않아 기술료 징수 근거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위해 단서조항 신설
제19조(기술료의 사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영리법인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기술료의 사용) ① --- 주관연구기관(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부출연금의 전문기관 상환액 인하사유 - 연구자들의 연구의욕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한 바, 한정된 재원으로 현행 총 35% 내외의 연구원 보상금을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하여는 전문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는 기술료 수준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u> 1.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50퍼센트 이상 2. 연구개발 재투자 : 30퍼센트 이상 3. 기관운영경비 : 10퍼센트 이내 4.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잔액의 범위 이내	②-----<u>납부 및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u> 1. 연구개발 재투자 : 50퍼센트 이상 2. 기관운영경비 3.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1호 연구원에 대한 보상을 제19조에 규정하였으므로, 삭제 ○ 나머지 금액 중 연구개발재투자에 50%를 배정하고, 나머지는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비목만 규정 ○ 4호 내용 신설이유 - 연구자에게 연구업무 이외에 기술마케팅까지 겸하게 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함

현행	개정	사유
<신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기술을 이전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50퍼센트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소유한 무형적 결과물을 주관연구기관인 기업이 실시하고 납부한 기술료는 예외로 한다.	○ 전문기관이 직접 기술을 이전하여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단서조항은 전문기관이 소유한 기술을 주관연구기관이 실시한 경우 전문기관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규정함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에 산입·활용하여야 한다.	⑤————— 징수한 기술료 중 제3항에 따라 보상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	○ 제3항에 따라 전문관리기관은 징수된 기술료 중 50%를 이미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의 사용만이 규정의 대상이 됨 ○ 기술료 사용 범위를 과학기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까지 확대
제20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생략)	제20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 —————. 1. ————— : 3년 2. (현행과 같음) 3. ————— : 3년 4. (현행과 같음)	○ 연구결과 활용을 참여기업이 포기하여 실시기업으로 양도되었으나, 실시기업이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협약의 위반자는 실시기업이므로 “실시기업” 포함 ○ 현행 규정이 법령위반에 따른 제재기간이 2년으로 획일화되어 위반정도의 심각 정도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현행	개정	사유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2년 이내 6. (생략)	5. _____ _____ : 3년 이내 6. (현행과 같음)	
<신설>	②1항에 의한 피제재자가 다른 사항 또는 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위반하여 제1항의 제재를 받은 경우 최대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 현행 규정은 제재기간 병합여부가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함
<신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항에 의한 제재를 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부처 또는 관계부처 공무원 합동으로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협약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근거 신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_____ _____ 통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동일 연구자가 다수부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약위반자 정보의 공유를 위해 종합관리시스템 등록의무화
③제2항의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제3항의 _____ _____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연구자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강제적용이 바람직함
<신설>	⑦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4조 제4항의 연구개발계획서의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 현행 규정은 제재기간의 적용시점이 불분명함에 따라 혼돈스러운 면이 있음 -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제재의 종료시점을 연구사업 신청마감일까지로 함

현행	개정	사유
제21조(세부규정의 제정·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2.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21조(세부규정의 제정·운영) _____ _____ _____ _____. 1. <삭제> 2. 연구개발과제의 _____ 3. (현행과 같음)	○ 연구개발결과는 결과평가에 한정지어질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과제”로 확대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4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규칙 제정시 관려부처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의견수렴 기간 필요 ○ 제16조의2 제4항 평가위원 후보단 Pool은 시스템구축에 소요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06년 이후로 조정
<별표 1>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제10조제1항관련)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 대기업 : 부담금액의 30 퍼센트 이상	<별표 1>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제10조제1항관련)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 퍼센트 이상	○ 기업의 연구개발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 부담항목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춤
<별표 2> □ 비목별 계상기준(제10조제3항관련) ○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별표 2> □ 비목별 계상기준(제10조제3항관련) ○ 내부인건비 - _____ _____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_____ _____ _____.	○ 실지금액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	사유
○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외부인건비 _____ _____ _____ _____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_____.	○ 실지금액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연구활동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7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연구활동비 - (현행과 같음) - 당해 과제수행과 _____로 연구책임자는 인건비의 25퍼센트를 계상하고 참여연구원은 인건비의 15퍼센트를 계상한다.	○ 연구활동진흥비 증액 사유 - 이공계 사기진작을 위한 경제적 보상차원 - 과제수주 수에 따라 연구자에게 경제적 보상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연구계의 요구에 따라, 연구활동 진흥비 확대 - 연구책임자는 연구팀의 운영, 대외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중대성을 고려 차등지급
○ 연구홍보비 - 연구과제의 홍보경비 등	<삭 제>	○ 과학문화활동비 신설
○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위탁연구개발비 인하 사유 - 주된과제와 위탁과제간 주종의 역할을 명확히하기 위함
○ 간접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 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간접경비(10조4항에 의해 간접경비가 결정되지 않은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개정안 제10조 제4항에 의해 간접경비율 결정대상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대학,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현행	개정	사유
○ 연구개발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연구개발준비금 -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과제수행 이외기간의 인건비 보전비목을 인상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기술이전, 확산을 위한 선결 조건은 기술의 가치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치평가 비용 산입
○ <신 설>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제작, 강연, 체험활동, Open Lab 홍보전문가 양성, 기타행사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당해 연구과제 결과물의 홍보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존 규정에서 확대
○ <신 설>	○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체계적 보상 및 예방시스템 부재 - 대학, 출연(연) 소속연구자들은 산재등에 가입되어 있으나, 참여연구원, 학생들은 안전관련 사각지대 - 과제 위험도에 따른 보험, 예방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계상가능 근거마련

부록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전문)

제정 2005.6.1 과학기술부령 제6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단계의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초연구단계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자연현상 및 관찰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단계
2. 응용연구단계 :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독창적인 연구 단계
3. 개발연구단계 :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체계적 연구 단계

제3조(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의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 ①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1인의 연구책임자가 총괄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를 종합한 총괄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항목 중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계획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의 선정 기준 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복성의 검토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기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연차실적·계획서) ①영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1인의 연구책임자가 총괄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를 종합한 총괄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목 중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계획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 참여기업 소속연구원의 내부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다.

②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건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8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5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000,000원

③영 별표 2의 직접비의 계상기준란의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이라 함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④영 별표 2의 간접비의 계상기준란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란에서 “프로그램”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제8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한국은행·채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그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경비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영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경비산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이 되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국방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중소기업청·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위촉직 위원 :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은 간접경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영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대학분야 소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이하 “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서식을 사용함에 있어 연구개발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때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서식을 사용함에 있어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연구개발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제1항의 서류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종류 후 1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따른 조치) ①영 제14조제3항에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2. 동일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13조(연구개발결과 정보의 통합 제공)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

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영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과제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영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별 소속기관·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적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과제관리시스템을 영 제16조의2제2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 등)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정보 관리 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제16조(평가위원후보단의 관리)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후보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장비정보망의 연구장비 등록사항) 영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장비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운영하는 연구장비정보망에 등

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16조 및 별표 1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영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2)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 (4) 해당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인 자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 친인척지간인 자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3)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기타 사항

평가위원 선정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제5조제2항관련)

1. 중복성의 판단요소

연구목표,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연구주체간에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연구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연구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각 부처별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맺기 전에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www.kordi.go.kr)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지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기준방법(제5조제3항관련)

1. 가점 부여항목

- 가. 최종평가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 가. 최종평가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지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지 만점의 50%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다.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라. 최종평가가 하위등급(상대평가지 하위 30%등급, 절대평가지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별표 4>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0조제3항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후 집행된 연구개발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1)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경비

(2) 연구기간 종료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비 비목간 변경승인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활동비중 연구활동진흥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세부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과제관리비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이 경우 인건비와 연동되어 있는 연구활동비를 인건비 미집행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회수하지는 아니한다.

마.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지 아니하였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 및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간접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사용한 금액.

바. 간접비 중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사용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

2. 회수금액의 범위

가. 사용잔액 및 부당집행분으로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 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1만원 이상의 금액

기술수요조사서

1.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사업명			
제안기관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기초(), 응용(), 개발()
	부처별 기술분류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 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 가. 시장동향 및 규모
- 나. 수출·입 효과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구비	정 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민 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개발기간	년	연 소요인력			명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기관명	
소 속 부 서		직 위	
주 소	(TEL)	(FAX)	(E-mail)
소속기관 주소			

9.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주요성능)	단위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나.				
	다.				
	라.				
	마.				
	바.				

<작성방법>

1. 연구개발사업명 :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가. 연구개발의 목표 :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 나. 연구개발의 내용 :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성능·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 나. 연구개발 동향 :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 다. 파급효과 : 당해 기술의 향상 및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 가. 시장동향 및 규모 : 국내·외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출입효과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하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예상 수출금액 및 수입대체 금액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 개발, 제도개선 등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여부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7. 기존의 선행연구 :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 평가항목(주요성능)은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①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② 부처별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NTRM)			
연구단계(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실용화:1, 비실용화:2)									
과 제 명			국문									
			영문									
③ (총괄)주관연구기관												
④ 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전 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연 도	정부 출연금	기업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 계	참 여 연구원수				
		현 금	현 물	소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 계												
총연구기간			. . . ~ . . . (개월)									
다년도(단계)협약연구기간			. . . ~ . . .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개월)									
⑤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 공동 연구	상대국			상대국	신청액		천원					
	연구기관명			연구 개발비	확정액		천원					
	상대국			상대국	신청		. . . ~ . . . (개월)					
	연구책임자			연구 개발기간	확정		. . . ~ . . . (개월)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장관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

나.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국내·외 현황

(1) 세계적 수준

개념정립 단계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	--	--------	--	-----------	--

(2) 국내수준

(3) 국내·외의 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 연구개발의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	--	--------	--	------------	--	----	--

나.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단계	구분	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1 단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2 단계	4차연도				
	5차연도				
:	:	:	:	:	: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연도	연구개발의 내용	추진 일정												연구비 (천 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	
			%	
			%	
			%	
			%	
2차 연도			%	
			%	
			%	
			%	
			%	
3차 연도			%	
			%	
			%	
			%	
			%	
⋮	⋮		%	
			%	
			%	
			%	
			%	
최종 평가			%	
			%	
			%	
			%	
			%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 가. 추진 배경
- 나. 성공가능성
- 다.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 라.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나. 기대성과
 - (1) 기술적 측면
 - (2) 경제적·산업적 측면

7. 연구원 편성표

가. 총 관(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주민등록번호	
	영문					
직장	기관명				전화	- -
	전공				F A X	- -
	부서		직위		휴대전화	- -
	주소	우편번호				E-mail
주택	주소	우편번호			전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가) 저 서
- (나) 국내전문학술지
- (다) 국외전문학술지
- (라) 대학 학술지
- (마) 학술회의 발표
- (바) 특 허
- (사) 기 타

(6)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실적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간	연구비(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나)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 고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 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 공 및 학 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다.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작성)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 고
				직위	연도	학교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총 괄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 도 비 목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합계	비고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인 건 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 금							
		현 물							
	소 계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시설비	현금							
		현물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현금							
		현물							
	·시작품 제작비	현금							
		현물							
직 접 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 접 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소 계								
연구사업비총액									

(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						
합 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 계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② 시설비

·설치비

시설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운영비(00원/개소 × 00월 × 00개소) : 원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① 시약 및 재료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② 전산처리비 : 원

③ 시험분석료 : 원

(다) 시작품 제작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 공여부기재
합 계							

(라) 여 비

① 국내여비

- 책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선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 급 00인 × 00원 × 00회 = 원

② 국외여비

- 책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선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 급 00인 × 00원 × 00회 = 원

(마) 수용비 및 수수료

- ① 인쇄/복사/인화비 : 원
- ② 공공요금 : 원
- ③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 원
- ④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원

(바) 기술정보활동비

- ① 정보활동비 : 원
 - 세미나개최비 :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 원
 - 정보 DB사용료 : 원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 원
 - 기술정보수집비 : 원

② 해외훈련비

- 책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선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 급 00인 × 00원 × 00회 = 원

③ 전문가초청·자문비

- 국내전문가
- 자문료 원/월 × 00월 × 00인 = 원
- 국외전문가
- 항공료 원 × 00인 = 원
- 체재비 원/월 × 00월 × 00인 = 원
- 자문료 원/월 × 00월 × 00인 = 원

④ 기술도입비

기술명	도입국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합 계				

⑤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

연구소명	설치비(원)	운영비(원)
합 계		

(사) 연구활동비

- ① 연구활동진흥비 : 인건비 × ()% = 원
- ② 하위단위 세부과제 관리비 : 인건비 × ()% = 원

(3) 위탁연구비 : 원

(4) 간접비

(가) 간접경비

기관명	산 정 기 준	금액(원)

(나) 연구개발준비금

기 관 명	산 정 기 준	금액(원)

(다)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구 분	단 가	수 량	금액 (원)	비 고

(라) 과학문화 활동비(인건비 × %) : 원

(마) 연구실 안전관리비(인건비 × %) : 원

10. 신청기업 현황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 .	주된 업종		업
기 업 유 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 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 ◦ ◦		
	자 기 자 본	백만원			
	매출액	연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11. 위탁 연구내용 현황

12.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가. 연구책임자의 의견

나.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13.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작성방법>

1. 표 지

① 사업명

- 1) 부처사업명(대) : 해당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부처별 기술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외에 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른 별도의 기술분류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③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가. 고유번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바.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세계적 수준 : 해당 단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국내수준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 대비 수준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연구개발요약서 제2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 세부 연구개발의 내용별로 추진일정을 작성하고, 다년도 협약시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및 전문가 활용방안,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추진체계 : 연구개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6.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계획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가.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 연구시설·기자재 및 보유자료 등에 대하여도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제 일정 : 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7.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가목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예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8.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의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나. (주관)연구책임자

- (1) 학력 : 학위란에 1.학사, 2.석사, 3.박사, 4.박사후 연수, 5.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산업재산권 출원·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 각 항목에 최근 3년간 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4)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 (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 구분란에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나) 참여연구원
 - 구분 :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세부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세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연구개발요약서 제8호의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연구개발요약서 제9호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가목(2)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의 기업유형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 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직급 :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비고 : 지급용 또는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외부인건비 :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란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기자재비의 구분란에는 ‘구입’·‘임차’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란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정보활동비 : 해외훈련비는 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하고, 기술도입비의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Know-how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위탁연구비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첨하여야 합니다.

11. 연구개발요약서 제10호가목의 기업 현황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12. 연구개발요약서 제11호의 위탁 연구내용 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직급별 연구참여인원 및 그 밖의 특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서술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차실적·계획서

(표지)

										과제번호			
①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② 부처별 기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가기술지도(NTRM)													
연구단계(기초:1, 응용:2, 개발:3)					실용화 대상여부(실용화:1, 비실용화:2)								
과 제 명		국문											
		영문											
③(총괄)주관연구기관													
④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세부)과제명		기관명			연구비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 공							
		전화		휴대폰		E-mail							
⑤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대기업수		기타		계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책임자											
연도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 수 (단위 : 천원, 명)										
	부터	까지	정부 출연금	정부외 출연금	기업체 부담금			상대국 부담금	합 계	총참여 연구원			
			현	금	현	물	소	계					
1차연도	.	.	.	.									
2차연도	.	.	.	.									
3차연도	.	.	.	.									
4차연도	.	.	.	.									
5차연도	.	.	.	.									
합 계													
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사업)의 연차실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장관 귀하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I. 실 적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	
			%	
			%	
			%	
			%	
2차 연도			%	
			%	
			%	
			%	
			%	
3차 연도			%	
			%	
			%	
			%	
			%	
:	:		%	
			%	
			%	
			%	
			%	
최종 평가			%	
			%	
			%	
			%	
			%	

2.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3.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목표달성도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 성 도(%)

나.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4. 연구성과

가.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	저 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나. 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다. 기술료 징수 현황

기 징수액	당해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 계

라. 사업화 현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당해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마. 인력활용/양성 성과

(1)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2) 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월 이상)				단기 (2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3)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바. 국제화/협력 성과

(1)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월)	파견국	학위	전공

(2)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당해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3)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4)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사.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5.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기자재명	구매금액 (원)	구매일자	기자재 활용용도	보관장소

6. 연구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비목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현물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현금				
		현물				
	시작품제작비	현금				
		현물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소 계					
연구사업비 총액						

7. 중요 연구변경 사항

II. 계 획

1. 국내외 관련분야 환경변화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및 내용

최 종 목 표	내 용	비 고

나. 향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단위 : 천원)

목 표	내 용	연 구 범 위	연구비

3. 연구추진내용

(단위 : 천원)

세부연구분야	월 단위 추진계획												소요연구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연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연도			%	
			%	
			%	
			%	
			%	
2차 연도			%	
			%	
			%	
			%	
			%	
3차 연도			%	
			%	
			%	
			%	
			%	
:	:		%	
			%	
			%	
			%	
			%	
최종 평가			%	
			%	
			%	
			%	
			%	

5.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나. 세부연구책임자(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만 해당)

세부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다. 위탁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	학위	전공	비고
				직위	연도	학교	

라.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명	직급	전 공 및 학 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6. 그 밖의 주요 변경사항

7.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1) 연구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연도 비목		차연도(20 . . .)			차연도(20 . . .)			비고
			금액	비율	잔액	금액	비율	잔액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용		%			%		
		지급용		%			%		
	외부인건비	현금		%			%		
		현물		%			%		
	소계			%			%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현금		%			%		
		현물		%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현금		%			%		
		현물		%			%		
	시작품제작비	현금		%			%		
		현물		%			%		
	여 비			%			%		
	수용비 및 수수료			%			%		
	기술정보활동비			%			%		
	연구활동비			%			%		
	소계			%			%		
위탁연구개발비			%			%			
간접비	간접경비			%			%		
	연구개발준비금			%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		
	과학문화활동비			%			%		
	연구실안전관리비			%			%		
	소계			%			%		
연구사업비 총액			%			%			

(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						
합 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합 계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① 연구기자재비

구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② 시설비

·설치비

시설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운영비(00원/개소 × 00월 × 00개소) : 원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① 시약 및 재료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② 전산처리비 : 원

③ 시험분석료 : 원

(다) 시작품 제작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 가공여부기재
합 계							

(라) 여 비

① 국내여비

- 책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선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 급 00인 × 00원 × 00회 = 원

② 국외여비

- 책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선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 급 00인 × 00원 × 00회 = 원

(마)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비 : 원
- 공공요금 : 원
-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 원
-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가·비품 : 원

(바) 기술정보활동비

- ① 정보활동비 : 원
 - 세미나개최비 :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 원
 - 정보 DB사용료 : 원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 원
 - 기술정보수집비 :: 원

② 해외훈련비

- 책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선임급 00인 × 00원 × 00회 = 원
- 원 급 00인 × 00원 × 00회 = 원

③ 전문가초청·자문비

- 국내전문가 : 원
- 자문료 00원/월 × 00월 × 00인 = 원
- 국외전문가 : 원
- 항공료 00원 × 00인 = 원
- 체재비 00원/월 × 00월 × 00인 = 원
- 자문료 00원/월 × 00월 × 00인 = 원

④ 기술도입비

기술도입명	도입국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합 계				

⑤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

- 설치비 00원/개소 × 00개소 = 원
- 운영비 00원/월 × 00월 × 00개소 = 원

(사)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진흥비 : 인건비 × ()% = 원
- 하위단위 세부과제 관리비 : 인건비 × ()% = 원

(3) 위탁연구비 : 원

(4) 간접비

(가) 간접경비

기관명	산 정 기 준	금액(원)

(나) 연구개발준비금

기 관 명	산 정 기 준	금액(원)

(다)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구 분	단 가	수 량	금액 (원)	비 고

(라) 과학문화 활동비(인건 비× %) : 원

(마) 연구실 안전관리비(인건비 × %) : 원

<작성방법>

1. 표지

① 사업명

가. 부처사업명(대) : 해당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부처별 기술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외의 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른 별도의 기술분류가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③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세부과제 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연구과제요약서

가. 과제고유번호 : 영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 :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전공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학위 :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바.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 연구목표·연구내용 및 연구성과를 합하여 700자 내외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실적

- 가.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 협약을 맺기 위하여
기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
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나목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100%중 몇%)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연구성과 : 1차 연도부터 누적된 성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라.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바목의 (2) 기술무역 성과의 분야란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 중에서 해당분야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마.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의 연구비 집행실적 : 이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교란에 작성기준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계획

- 가. 연구개발요약서 제1호의 국내·외 관련분야 환경변화 : 전년도 연구개발계획서 또
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연구개발요약서 제2호가목의 최종목표 및 내용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
니다.
- 다. 연구개발요약서 제3호의 연구추진내용 : 세부연구분야별로 추진내용을 월 단위 추
진계획란에 화살표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라. 연구개발요약서 제4호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하고, 연차별 세부연구목표 제시와 함께 세부연구목표별 가중치 (100%중 몇%)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마.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가목의 총괄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중
심으로 연구개발팀의 편성을 도식화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 바. 연구개발요약서 제5호라목의 참여 연구원 : 구분란에 위촉연구원은 ‘위촉’, 참여기
업연구원은 ‘참여기업’을 기재하고, 직급란에는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
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 연구개발요약서 제6호의 그 밖의 주요 변경사항 : 그 밖에 전년도 계획과 다른 부
분을 간략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 아.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가목의 (2) 민간부담 연구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의 기업
유형란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의 경우),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의 경우), 기
타로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자.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나목 (1) 인건비

- (1)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가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지 아니하는 연구원도 관련경비의 산출근거로서 작성하여야 하고, 직급란에는 원급·전임급·선임급·책임급 또는 수석급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타연구사업 참여현황란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지급용’과 ‘미지급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외부인건비 : 비고란에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현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차.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나목 (2) 직접비

-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란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기자재비의 구분란에는 ‘구입’, ‘임차’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각 란에 ()로 표시하고 합계도 별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여비 : 지역과 기간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기술활동정보비 : 해외훈련비란에는 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하고, 기술도입비의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Know-how 등)을 기재하며,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란에는 해외연구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카. 연구개발요약서 제7호나목 (3) 위탁연구비 : 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를 별첨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당해연도 연구 개발비(천원)	정 부 출연금		정부외의자 의 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물)	()	계	()
당 해 연 도 연구개발기간	. . . ~ . . . (개월)							
참 여 기 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장 관 귀하								

(붙임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다음 해 이월액
인 건 비	()	()	()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	()	()		
직 접 비	()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	()	()		
·여 비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금 소계						
현물 소계	()	()	()	()		
합 계						

비고 1.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직인]
- 주관연구책임자 : [인]
- 연 구 기 간 :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인 건 비	()	()	()	()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	()	()	()		
직 접 비	()	()	()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	()	()	()		
·여 비	()	()	()	()		
·수용비 및 수수료	()	()	()	()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금 소계						
현물 소계	()	()	()	()		
합 계						

비고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 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 위탁과제명 : _____
- 위탁연구기관 : _____ [직인]
- 위탁연구책임자 : _____ [인]
- 위탁연구기간 : _____

(단위 : 원)

비 목 \ 구 분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합 계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 구 책 임 자		연구기간	20 . . ~ 20 . . (년 월)
참 여 기 업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 부 출 연 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정부외의 출연금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기업채부담금(현물)	(원 원)				
당해연도연구개발비 (현물)	(원 원)				

나. 이자발생 반납액

구 분	금 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연구기간중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사용잔액중발생이자	원	원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 체 일 : 근거번호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합 계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주관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년 월 일

장 관 귀 하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

I. 인쇄규격

1.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세로 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 가. 표지 200g/m² 양면 아트지
 - 나. 내용 80g/m² 모조지
4. 인쇄방법
 - 가.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 나. 내용 : 흑색 지정활자

II.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영문 요약서
6. 영문 목차
7. 목 차
8. 본 문
9. 뒷면지

III.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시에는 이에 준한다.

IV. 편집순서별 서식

1. 표지

(뒷 면)

(앞 면)

주 의 (편집순서 8) (15 포인트 고딕체열) ↑ 6cm ↓	과 제 번 호 고 령 토 광 석 의 광 물 조 성 연 구 과 학 기 술 부 ↑ 3cm ↓	↑ 5cm ↓ 과제번호 고령토의 종합활용 기술개발(세부사업명 또는 중과제명) (18 포인트 고딕체열) Studies on Comprehensive Utilization of Domestic Kaolin 고령토 광석의 광물조성연구(세부과제명) (17 포인트 고딕체열) Mineralogy of Kaolin Ores (15 포인트 명조체열) 한국자원연구소(세부과제 연구기관명) (17 포인트 명조체열) ↑ 9cm ↓ 과 학 기 술 부 (17포인트 명조체열) ↑ 4cm ↓
--	--	---

2. 제출문

제 출 문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과제 (세부과제 “ 에 관한 연구”) 의 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

연 구 원 :

” :

” :

협동연구기관명 :

협동연구책임자 :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관리번호		해당단계 연구기간		단계 구분	
연구사업명	중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중 과 제 명				
	세부(단위) 과 제 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연구원수	총 : 명 내부 :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		상대국연구기관명 :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		연구책임자 : -		
요 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보고서 면 수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영 어				

4. 요약문

요 약 문

I. 제 목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IV. 연구개발결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5. 영문 요약서

SUMMARY

(영문요약문)

6. 영문 목차

CONTENTS

(영문목차)

7. 목 차

목 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의 기여도 등을 기술)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7장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

8. 본 문

※ 작성방법

- 가.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 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 다.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 바.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 사.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 자.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9.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000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00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부처사업명(대)					
사 업 명(중)					
세부사업명(소)					
부처 기술분류	(대)	(중)	(소)	국가기술지도 (NTRM)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대)	(중)	(소)		
총괄과제				총괄책임자(기관)	
과 제 명				연구단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 연구기관	

비고 : 총괄과제란은 총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평가일 :

3.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4. 평가자 확인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	--

(붙임)

I.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

비고 :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각 항목별 200자 이내)

II.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1			
2			
3			
4			
5			

III.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

IV.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

부록 3.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시(지정)사항

1.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과학기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에 관한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호) 제4조 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년 월 일
과학기술부장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하는 공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의 Web Site는 (<http://www.OOO.OO>)로 한다.

제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의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운영한다.

제4조 (공고내용의 입력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에 위임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발급하는 ID와 Password를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내용을 확정함과 동시에 다른 공고방법(일간지, 관보, 홈페이지)에 우선하여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입력내용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공고문, 부처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부처 연구개발사업 관계법령, 공지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절차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2. (고시) 연구개발 소외지역
(과학기술부 고시)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관한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호) 제5조 제4항의 연구개발 소외 지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년 월 일
과학기술부장관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연구개발 소외지역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개발 소외지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 4항의 연구개발 소외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보칙)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소외 지역의 범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3. (고시) 연구개발과제 표준분류체계 : 과제고유번호 (분류코드)
(과학기술부 고시)

연구개발과제 표준분류체계에 관한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7조 제4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표준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년 월 일
과학기술부장관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규정 제7조 제4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표준분류체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 표준분류체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표준분류체계는 별표와 같다.

제3조(보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분류체계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본 분류체계의 기본형식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류코드를 임의로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 연구개발과제 표준분류체계>

부 처	부처 코드	부처사업	부처 사업 코드	중 사 업	중사업 코드	과학기술분류 (표준분류체계)	최초 협약 년도	일련 번호
국무조정실	A	기초기술연구회	0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01		05	0001
국무조정실	A	기초기술연구회	0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02			
국무조정실	A	기초기술연구회	0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03			
국무조정실	A	기초기술연구회	01	한국천문연구원	004			
국무조정실	A	산업기술연구회	02	한국한의학연구원	005			
국무조정실	A	산업기술연구회	02	한국식품개발연구원	006			
국무조정실	A	산업기술연구회	0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007			
국무조정실	A	산업기술연구회	0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08			
국무조정실	A	산업기술연구회	02	한국기계연구원	009			
국무조정실	A	산업기술연구회	02	한국화학연구원	010			
국무조정실	A	산업기술연구회	02	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011			
국무조정실	A	산업기술연구회	02	한국전기연구원	012			
국무조정실	A	산업기술연구회	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13			
국무조정실	A	공공기술연구회	0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14			
국무조정실	A	공공기술연구회	0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015			
국무조정실	A	공공기술연구회	0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16			
국무조정실	A	공공기술연구회	03	한국해양연구원	017			
국무조정실	A	공공기술연구회	0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18			
국무조정실	A	공공기술연구회	0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19			
국무조정실	A	공공기술연구회	0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020			
국무조정실	A	공공기술연구회	0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1			
교육인적자원부	B	국립대학교원연구보조	01	국립대학교원연구보조	022			
교육인적자원부	B	국제백신연구소	02	국제백신연구소	023			
교육인적자원부	B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육성	03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육성	024			
교육인적자원부	B	산학협력촉진지원(보조)	04	산학협력촉진지원(보조)	025			
교육인적자원부	B	정책연구비	05	정책연구비	026			
교육인적자원부	B	학술연구조성사업	06	공동연구과제지원	027			
교육인적자원부	B	학술연구조성사업	06	대학원의 연구력강화	028			
교육인적자원부	B	학술연구조성사업	06	우수연구자지원	029			
교육인적자원부	B	학술연구조성사업	06	우수학술단체지원	030			
교육인적자원부	B	학술연구조성사업	06	기초학문지원	031			
교육인적자원부	B	학술연구조성사업	06	지방대학성과제지원	032			

부 처	부처 코드	부처사업	부처 사업 코드	중 사 업	중사업 코드	과학기술분류 (표준분류체계)	최초 협약 년도	일련 번호
교육인적자원부	B	한국학술진흥재단	07	한국학술진흥재단	033			
교육인적자원부	B	전국단위연구소운영	08	전국단위연구소운영	034			
교육인적자원부	B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35			
국방부	C	국방과학연구소	01	기초연구/특화센터	036			
국방부	C	국방과학연구소	01	국방과학연구소	037			
국방부	C	국방과학연구소	01	민군겸용기술개발	038			
행정자치부	D	정책연구비	02	정책연구비	039			
행정자치부	D	국립방재연구소	01	국립방재연구소	040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국제공동연구사업	041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민군겸용기술개발	042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국제화기반조성사업	043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044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핵심연구개발	045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나노바이오기술개발	046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연구기반구축사업	047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비행체핵심시험장비	048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진공기술기반구축	049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중전기연구기반구축	050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나노종합fab구축	051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나노특화fab구축	052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광양자빔연구시설	053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자기공명장치설치	054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055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우수연구및리더육성	056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창의적연구진흥사업	057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국가지정연구실사업	058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연구기획평가사업	059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연구개발국 연구기획평가비	060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과학기술인력국 연구기획평가비	061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우주기술개발사업	062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다목적실용위성개발	063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과학위성개발	064			

부 처	부처 코드	부처사업	부처 사업 코드	중 사 업	중사업 코드	과학기술분류 (표준분류체계)	최초 협약 년도	일련 번호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통신기상위성개발	065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발사체개발	066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우주센터건설	067			
과학기술부	E	특정연구개발사업	01	우주기반기술	068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목적기초연구사업	069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기초연구지원	070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선도과학자육성	071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072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073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여성과학자지원	074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075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연구기획평가사업	076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기초과학인력국 연구기획평가비	077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우수연구집단육성	078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우수연구센터육성	079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	080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국가핵심연구센터육성	081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특성화장려사업	082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고가특수연구기기	083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특수연구소재은행	084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전문연구정보센터	085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	086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	087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과학고영재교육	088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대통령과학장학생	089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해외현지연구개발	090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신진연구자연수	091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해외과학기술인력유치활용	092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과학인력종합DB구축	093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094			
과학기술부	E	기초과학연구지원	02	고분해능질량분석기구축	095			
과학기술부	E	원자력연구개발사업	03	원자력협력기반조성사업	096			
과학기술부	E	원자력연구개발사업	03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097			

부 처	부처 코드	부처사업	부처 사업 코드	중 사 업	중사업 코드	과학기술분류 (표준분류체계)	최초 협약 년도	일련 번호
과학기술부	E	원자력연구개발사업	03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기금)	098			
과학기술부	E	원자력연구개발사업	03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기금)	099			
과학기술부	E	원자력연구개발사업	03	원자력연구개발실용화사업(기금)	100			
과학기술부	E	원자력연구개발사업	03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기금)	101			
과학기술부	E	원자력연구개발사업	03	방사선기술(RT)개발사업	102			
과학기술부	E	연구성과지원사업	04	연구성과지원사업	103			
과학기술부	E	연구성과지원사업	04	연구성과확산사업	104			
과학기술부	E	출연기관육성지원	05	고등과학원	105			
과학기술부	E	출연기관육성지원	05	과학기술원	106			
과학기술부	E	출연기관육성지원	05	과학기술기획평가원	107			
과학기술부	E	출연기관육성지원	05	과학재단	108			
과학기술부	E	출연기관육성지원	05	광주과기원	109			
과학기술부	E	출연기관육성지원	05	원자력병원	110			
과학기술부	E	출연기관육성지원	05	원자력의학원	111			
과학기술부	E	출연기관육성지원	05	원자력안전기술원	112			
과학기술부	E	출연기관육성지원	05	원자력연구소	113			
과학기술부	E	과학기술자문과제연구조사비	06	과학기술자문과제연구조사비	114			
과학기술부	E	정책연구비	07	정책연구비	115			
기상청	F	기상연구소	01	기상연구소	116			
기상청	F	기상지진기술개발	02	기상지진기술개발	117			
기상청	F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	03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	118			
문화관광부	G	게임기술 개발사업	01	게임기술 개발사업	119			
문화관광부	G	게임기술 개발사업	01	게임기술연구개발지원	120			
문화관광부	G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02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	121			
농림부	H	농림기술개발	01	농림기술개발	122			
농림부	H	농림기술관리센터	02	농림기술관리센터	123			
농림부	H	농촌생산기반연구	03	농촌생산기반연구	124			
농림부	H	농촌생산기반연구	03	농촌개발시험연구	125			
농림부	H	동물검역기술강화연구	04	동물검역기술강화연구	126			
농림부	H	동물검역기술강화연구	04	동축산물안전성연구	127			
농림부	H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28			
농림부	H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2	수의과학검역원(동물질병연구)	129			
농림부	H	정책연구비	03	정책연구비	130			

부 처	부처 코드	부처사업	부처 사업 코드	중 사 업	중사업 코드	과학기술분류 (표준분류체계)	최초 협약 년도	일련 번호
농림부	H	북한농업연구	04	북한농업연구	131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고령지농업시험장	132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고령지원예연구	133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농업과학기술연구원	134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농업과학기술원	135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영남농업시험장	136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영남작물시험장	137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원예연구소	138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작물시험장	139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작물시험연구	140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제주농업시험장	141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제주축산원예농업연구	142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호남농업시험장	143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호남작물시험장	144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축산기술연구소	145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축산기술연구	146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농업기계화연구소	147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농업기계화연구	148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산하 10개 시험연구소(기본사업비+ 인건비)	149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산하시험연구소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	150			
농촌진흥청	I	고령지농업시험장	05	농업생명공학연구원	151			
농촌진흥청	I	농업경영연구	06	농업경영연구	152			
농촌진흥청	I	농업경영연구	06	농업경영기술개발	153			
농촌진흥청	I	농업기술공동연구	07	농업기술공동연구	154			
농촌진흥청	I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08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155			
농촌진흥청	I	병해충잡초발생 감시체계 구축	09	병해충잡초발생 감시체계 구축	156			
농촌진흥청	I	지역연구기반조성	10	지역연구기반조성	157			
산림청	J	임업연구원	01	임업연구원	158			
산림청	J	임업연구원	01	산림유전자원연구	159			
산림청	J	지능형교통시스템	02	특정연구개발출연	160			
산림청	J	지능형교통시스템	02	임업기술연구개발	161			

부 처	부처 코드	부처사업	부처 사업 코드	중 사 업	중사업 코드	과학기술분류 (표준분류체계)	최초 협약 년도	일련 번호
산업자원부	K	국제산업기술협력	01	국제산업기술협력	162			
산업자원부	K	국제산업기술협력	01	한일산업협력	163			
산업자원부	K	국제산업기술협력	01	한미산업협력	164			
산업자원부	K	국제산업기술협력	01	한EU산업협력	165			
산업자원부	K	국제산업기술협력	01	한중산업협력	166			
산업자원부	K	국제산업기술협력	01	한아시아산업협력	167			
산업자원부	K	국제산업기술협력	01	한중동산업협력	168			
산업자원부	K	전문생산기술연구소	0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9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국제협력기술개발	170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국제공동기술개발	171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민군겸용기술개발	172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항공우주기술개발	173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다목적실용위성2호본체개발	174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175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산업혁신기술개발	176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산업혁신기술개발(공통핵심기술)	177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	178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디자인기술개발	179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산업혁신기술개발(중기거점기술)	180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산업혁신기술개발(차세대신기술)	181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산업혁신기술개발(표준화기술)	182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산업혁신기술개발(핵심기반기술)	183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산업혁신기술개발(신기술실용화)	184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부품소재기술개발	185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186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전자상거래기술개발	187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청정기술개발	188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개발	03	청정생산기술개발	189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산업기술기반구축	190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	191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부품소재기반구축	192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전자상거래기반구축	193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산업부분B2B네트워크구축	194			

부 처	부처 코드	부처사업	부처 사업 코드	중 사 업	중사업 코드	과학기술분류 (표준분류체계)	최초 협약 년도	일련 번호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디지털산업단지구축	195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전자상거래인력양성	196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전자상거래지원센터운영지원	197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기술연구집단화	198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신기술창업보육사업	199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테크노파크조성	200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산학협동기술교육프라자	201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지역기술혁신센터	202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산업기술대학	203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디자인기반구축	204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산업기술인력양성	205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기반조성	04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206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시험원	05	산업기술시험원	207			
산업자원부	K	산업기술평가원	06	산업기술평가원	208			
산업자원부	K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보조)	07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보조)	209			
산업자원부	K	에너지기술개발	08	대체에너지기술개발	210			
산업자원부	K	요업기술원	09	요업기술원	211			
산업자원부	K	정책연구비	10	정책연구비	212			
산업자원부	K	정책연구비(산자부 예특)	11	정책연구비(산자부 예특)	213			
산업자원부	K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보조)	12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보조)	214			
산업자원부	K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보조)	12	한국디자인진흥원(보조)	215			
산업자원부	K	기술표준원	13	기술표준원	216			
산업자원부	K	전력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	14	전력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	217			
산업자원부	K	전력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	14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기금)	218			
산업자원부	K	전력산업인프라구축 지원사업(기금)	15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 업(기금)	219			
산업자원부	K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	16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	220			
중소기업청	L	산학연컨소시엄사업	01	산학연컨소시엄사업	221			
중소기업청	L	산학연컨소시엄사업	02	산학연공동기술개발	222			
중소기업청	L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0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23			
중소기업청	L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	04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	224			
중소기업청	L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	04	중소기업이전기술실용화	225			
중소기업청	L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	04	대학기술이전센터운영	226			

부 처	부처 코드	부처사업	부처 사업 코드	중 사 업	중사업 코드	과학기술분류 (표준분류체계)	최초 협약 년도	일련 번호
중소기업청	L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	05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	227			
중소기업청	L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평가	06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평가	228			
중소기업청	L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평가	06	신기술아이디어타당성평가	229			
중소기업청	L	국내조달시장연계신 제품연구개발	07	국내조달시장연계신제품연 구개발	230			
중소기업청	L	국내조달시장연계신 제품연구개발	07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231			
중소기업청	L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 지원	08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 지원	232			
정보통신부	M	전파연구소	01	전파연구소	233			
정보통신부	M	정보통신산업기술개 발사업(기금)	02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기금)	234			
정보통신부	M	정보통신산업기술개 발사업(기금)	02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기금)	235			
정보통신부	M	정보통신원천기술개 발사업(기금)	03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사업 (기금)	236			
정보통신부	M	정보통신원천기술개 발사업(기금)	03	정보통신원천기술개발 (기금)	237			
정보통신부	M	정보통신연구기반조 성사업(기금)	04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 (기금)	238			
정보통신부	M	정보통신연구기반조 성사업(기금)	04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 (기금)	239			
정보통신부	M	정보통신표준화사업(기금)	05	정보통신표준화사업(기금)	240			
정보통신부	M	정보통신표준화사업(기금)	05	정보통신표준화(기금)	241			
정보통신부	M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기금)	06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기금)	242			
정보통신부	M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기금)	06	정보통신인력양성(기금)	243			
정보통신부	M	전파방송연구개발(8과제)	07	전파방송연구개발(8과제)	244			
정보통신부	M	전파방송연구개발(8과제)	07	전파방송연구개발	245			
보건복지부	N	보건산업진흥	0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246			
보건복지부	N	보건산업진흥	01	보건산업진흥(연구기획평가)	247			
보건복지부	N	보건산업진흥	01	보건산업진흥(의료정보기술개발)	248			
보건복지부	N	보건산업진흥	01	보건산업진흥(건강기능제품개발)	249			
보건복지부	N	보건산업진흥	01	보건산업진흥(보건의료기술 인프라개발)	250			
보건복지부	N	보건산업진흥	01	신약개발지원	251			

부 처	부처 코드	부처사업	부처 사업 코드	중 사 업	중사업 코드	과학기술분류 (표준분류체계)	최초 협약 년도	일련 번호
보건복지부	N	보건산업진흥	01	보건산업진흥(신약개발)	252			
보건복지부	N	보건산업진흥	01	바이오보건기술연구개발	253			
보건복지부	N	보건산업진흥	01	보건산업진흥(보건의료바이오기술개발)	254			
보건복지부	N	보건산업진흥	01	보건산업진흥(바이오장기기술개발)	255			
보건복지부	N	보건산업진흥	01	휴먼의료공학기술개발	256			
보건복지부	N	보건산업진흥	01	보건산업진흥(의료기기기술개발)	257			
보건복지부	N	보건산업진흥	01	미래보건의료전략기술개발	258			
보건복지부	N	보건산업진흥	01	보건산업진흥(미래보건의료 전략기술개발)	259			
보건복지부	N	정책연구비	02	정책연구비	260			
보건복지부	N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61			
보건복지부	N	한방치료기술개발	04	한방치료기술개발	262			
보건복지부	N	국립보건원	05	국립보건원	263			
보건복지부	N	국립의료원임상연구비	06	국립의료원임상연구비	264			
보건복지부	N	국립병원임상연구(9 개병원)	07	국립병원임상연구(9개병원)	265			
보건복지부	N	유전체실용화사업	08	유전체실용화사업	266			
보건복지부	N	전염병실험장비현대화	09	전염병실험장비현대화	267			
보건복지부	N	국립암센터연구소 지원	10	국립암센터연구소 지원	268			
보건복지부	N	국립암센터연구소 지원	10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	269			
식품의약품안전청	O	독성연구소	01	독성연구소	270			
식품의약품안전청	O	독성연구소	01	국립독성연구소	271			
식품의약품안전청	O	식약청 기본적 경비	02	식약청 기본적 경비	272			
식품의약품안전청	O	식품의약품 안전성관리	03	식품의약품 안전성관리	273			
식품의약품안전청	O	식품의약품 안전성관리	03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	274			
환경부	P	국립환경연구원	01	국립환경연구원	275			
환경부	P	정책연구비	02	정책연구비	276			
환경부	P	지역환경기술개발센 터운영	03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운영	277			
환경부	P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04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278			
환경부	P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04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279			
환경부	P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05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280			

부 처	부처 코드	부처사업	부처 사업 코드	중 사 업	중사업 코드	과학기술분류 (표준분류체계)	최초 협약 년도	일련 번호
환경부	P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05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	281			
노동부	Q	기술교육대학	01	기술교육대학	282			
건설교통부	R	건설기반기술혁신	02	건설기반기술혁신	283			
건설교통부	R	건설기반기술혁신	02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284			
건설교통부	R	경량전철시스템기술개발	03	경량전철시스템기술개발	285			
건설교통부	R	고속철도기술개발	04	고속철도기술개발	286			
건설교통부	R	도시철도표준화연구	05	도시철도표준화연구	287			
건설교통부	R	산학연공동연구	06	산학연공동연구	288			
건설교통부	R	산학연공동연구	06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289			
건설교통부	R	정책연구비	07	정책연구비	290			
건설교통부	R	지능형교통시스템	08	지능형교통시스템	291			
건설교통부	R	해외건설시장 조사연구	09	해외건설시장 조사연구	292			
건설교통부	R	해외건설시장 조사연구	10	해외건설수출진흥을위한조사	293			
건설교통부	R	건설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	11	건설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	294			
건설교통부	R	수자원확보기술개발	12	수자원확보기술개발	295			
건설교통부	R	수자원확보기술개발	12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296			
건설교통부	R	교통핵심기술개발	13	교통핵심기술개발	297			
건설교통부	R	교통핵심기술개발	13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	298			
철도청	S	정책연구비	01	정책연구비	299			
철도청	S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02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300			
철도청	S	철도기술연구개발비	03	철도기술연구개발비	301			
해양수산부	T	국립수산과학원	01	국립수산과학원	302			
해양수산부	T	수산연구개발	02	수산연구개발	303			
해양수산부	T	정책연구비	03	정책연구비	304			
해양수산부	T	첨단항만기술개발	04	첨단항만기술개발	305			
해양수산부	T	첨단항만기술개발	04	항로표지기술개발	306			
해양수산부	T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05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307			
해양수산부	T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05	해양광물자원개발	308			
해양수산부	T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05	해양심층수다목적이용	309			
해양수산부	T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05	해양생물자원개발	310			
해양수산부	T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05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	311			
해양수산부	T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05	해양수산중소벤처기술	312			

부 처	부처 코드	부처사업	부처 사업 코드	중 사 업	중사업 코드	과학기술분류 (표준분류체계)	최초 협약 년도	일련 번호
해양수산부	T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05	해양공간자원및장비개발	313			
해양수산부	T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05	해양관측 및 조사	314			
해양수산부	T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	06	바다목장개발	315			
해양수산부	T	특정수산기술개발	07	특정수산기술개발	316			
해양수산부	T	해상안전연구개발	08	해상안전연구개발	317			
해양수산부	T	해상안전연구개발	08	선박안전연구개발	318			
해양수산부	T	해양정책연구개발	09	해양정책연구개발	319			
해양수산부	T	해양정책연구개발	09	국제해양과학협력	320			
해양수산부	T	해양정책연구개발	09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321			
해양수산부	T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10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322			
해양수산부	T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10	해양환경및폐기물처리기술개발	323			
해양수산부	T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10	갯벌생태계연구	324			
해양수산부	T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10	해양생태계내분비계장애물질연구	325			
해양수산부	T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10	환경관리해역환경개선	326			
해양수산부	T	해양환경보전연구개발	10	황해광역생태계연구차관상환	327			
해양수산부	T	새만금해역 해양환경 영향조사	11	새만금해역 해양환경 영향조사	328			
해양수산부	T	NOWPAP 사무국 운영	12	NOWPAP 사무국 운영	329			
해양수산부	T	NOWPAP 사무국 운영	12	NOWPAP사무국운영	330			
해양수산부	T	해양수산연구개발기획연구	13	해양수산연구개발기획연구	331			

4. (고시) 간접경비 계상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과학기술부 고시)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 비율에 관한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0조제4항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의 ()년도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년 월 일

과학기술부장관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①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경비는 연구과제에 계상하여 지급하는 내부인건비에 이 기준에서 정한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간접경비 = 내부인건비 × 간접경비 비율).

②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특정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①특정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경비는 연구과제에 계상하여 지급하는 내부인건비에 이 기준에서 정한 해당 특정연구기관의 간접경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간접경비 = 내부인건비 × 간접경비 비율).

② 특정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대학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①대학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경비는 연구과제에 계상하여 지급하는 내부인건비에 이 기준에서 정한 해당 대학의 간접경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간접경비 = 내부인건비 × 간접경비 비율).

②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5조 (비영리법인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①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경비는 연구과제에 계상하여 지급하는 내부인건비에 이 기준에서 정한 해당 비영

리법인의 간접경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간접경비 = 내부인건비 × 간접경비 비율).

② 비영리법인의 간접경비 계상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6조 (간접경비 비율 비적용 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간접경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2에서 정한 간접경비가 결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적용하는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일부터 년도 간접경비 비율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 별표 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

* 별표2 (특정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

* 별표3 (대학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

* 별표4 (비영리법인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

5. (고시)사용실적보고 면제기준: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의 기준
(과학기술부 고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면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조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보고 면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년 월 일

제1조 (목적) 본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면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기준) ①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다.
②사용실적보고 면제대상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보칙)

--

부 칙

이 기준은 고시일부터 ()년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면제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사용실적보고 면제대상기관**

--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